#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체계 평가

## Evaluation of the Issuance and Management System of Local Gift Certificates

김태은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체계 평가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체계 평가

**총 괄 |** 김경호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이상은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작 성 |** 김태은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

**지 원 |** 김선정 사회행정사업평가과 행정실무원
변수영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자료분석연구원

본 보고서는「국회법」제22조의2 및「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 02) 6788-3773 | sae@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체계 평가

2025. 11.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이 보고서는「국회법」제22조의2 및「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5. 11. 6.)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 발 간 사

우리나라 지역경제는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수도권 중심의 산업 구조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연간 발행규모는 2026년 기준 24조원 이상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투입액만 2조원에 이르는 등 재정적 비중 또한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체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 대행 및 운영 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구조에 대한 체계적 자료와 분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별 발행액과 국비지원액은 관리하고 있으나,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수수료 등 구체적 비용 현황에 관한 자료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운영·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류형·모바일형·카드형 상품권의 판매 및 운영 위탁수수료 구조를 중심으로 합리적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에 있어 실질적인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제도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보고서가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11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지 동 하**

# 차 례

CONTENTS


요 약 / 1

Ⅰ. 개 요 / 1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 1
2. 보고서의 구성과 평가 방법 ····· 2

Ⅱ.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 4

1. 지역사랑상품권 개요 ····· 4
   가. 지역사랑상품권 개요 ····· 4
   나. 지역사랑상품권 주요 연혁 ····· 6
2. 관련 법령 및 조례 ····· 9
3.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체계 ····· 11
   가. 상품권 종류별 운영 체계 ····· 11
   나. 상품권 종류별 발행 및 운영 위탁업체 현황 ····· 14
   다. 가맹점 등록 기준 ····· 15
   라. 구매한도 및 보유한도 ····· 17
4.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현황 ····· 19
   가. 상품권 발행 자치단체 현황 ····· 19
   나. 상품권 발행액 ····· 21
   다. 유형별 발행액 ····· 22
   라. 인구당 발행액, 인구당 국비지원액 ····· 23
   마. 할인율과 국비지원율 ····· 24
5. 국비지원 사업 연도별 예산 현황 ····· 28

# CONTENTS


Ⅲ. 운영수수료 현황 / 30

1. 상품권 유형별 수수료 현황 ····· 30
   가. 상품권 발행 및 관리를 위한 운영비 발생 구조 ····· 30
   나. 운영비 수수료 지급 현황 ····· 35
2. 지방자치단체별 수수료율 비교 ····· 37
   가. 지류상품권 ····· 37
   나. 모바일상품권 ····· 38
   다. 카드형상품권 ····· 39
3. 주요 운영대행사 수수료 현황 ····· 41
   가. 운영대행사 A ····· 41
   나. 운영대행사 B ····· 42
   다. 운영대행사 C ····· 43
   라. 운영대행사 D ····· 43
   마. 지역은행(E은행, F은행, G은행, H은행) ····· 43

Ⅳ. 주요 개선과제 / 44

1. 상품권 발행 관련 ····· 44
   가.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방비 최소분담율 차등 설정 및 할인율 결정의 자율성 확대 필요 ····· 44
   나. 유효기간 만료된 상품권에 대한 처리방법의 일관성 확보 및 유효기간 만료 전 상품권 소진을 위한 사용 촉진 방안 마련 필요 ····· 49
   다. 부정유통 관리 감독 강화 필요 ····· 51

# CONTENTS


2. 운영수수료 관련 ····· 57

가. 운영수수료에 대한 정보 공유 필요 ····· 57

나. 가맹점의 카드결제수수료 부담에 대한 완화 방안 모색 필요 ····· 59

3. 자금관리 관련 ····· 62

가.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 여부 관리 필요 ····· 62

나. 이자수입의 처리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마련 필요 ····· 64

Ⅴ. 결론 및 시사점 / 67

# 요 약

## Ⅰ. 개요

❑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가 가능할 정도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보편화되었으나,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이 각 자치단체별로 시행됨에 따라 위탁 운영 수수료가 제각각이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도 부재하며, 운영 등 관리 체계가 미흡한 상황임

❑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운영·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기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판매대행점과 발행 및 운영 위탁업체(운영대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보다 세밀히 검토

○ 상품권 발행, 운영수수료, 자금관리 측면에서 개선과제를 도출

[분석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구성 | 주요 분석 내용 |
|---|---|
| Ⅰ. 개요 | ◦ 분석의 배경 및 목적<br>◦ 보고서의 구성과 분석 방법 |
| Ⅱ.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 ◦ 지역사랑상품권 개요<br>◦ 관련 법령 및 조례<br>◦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체계<br>◦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현황<br>◦ 국비지원 사업 연도별 예산 현황 |
| Ⅲ. 운영 수수료 현황 | ◦ 상품권 유형별 수수료 현황<br>◦ 지방자치단체별 수수료 현황<br>◦ 주요 운영대행업체별 수수료 현황 |
| Ⅳ. 주요 개선과제 | ◦ 상품권 발행 관련<br>◦ 운영수수료 관련<br>◦ 자금관리 관련 |
| Ⅴ. 결론 및 시사점 | ◦ 종합제언 |

# Ⅱ.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 1. 지역사랑상품권 개요

❑ (정의)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임. 지역에 따라 00상품권, 00화폐, 00페이, 00카드 등으로 명칭됨

❑ (주요 연혁) 1996년 강원도 화천군과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지역 내에서 이용가능한 상품권을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보고 있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5년 6월 기준 190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1/17개, 기초 179/226개)에서 상품권을 발행

❑ (상품권 유형) 지류형, 모바일형, 카드형이 있음

○ 최근에는 모바일형과 카드형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카드형상품권을 구매하였더라도 모바일로도 결제할 수 있고, 모바일상품권도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1)]

[지역사랑상품권 유형]

| 구분 | 지류형(종이) | 모바일형(앱) | 카드형(체크카드) |
|---|---|---|---|
| 구매방법 | 지역 내 은행 등에서 구매 가능 | chak, 서울페이 등 각 지역별 모바일상품권 발급을 위해 개발한 앱에서 구매 가능 | 카드사, 지자체 앱 등 |
| 사용방법<br>(결제방법) | 지류상품권 제출 | QR 결제(가맹점에 비치된 QR 스캔, 금액입력, 결제버튼),<br>삼성페이 등과 연동하여 결제 | 체크카드 단말기에 결제 |

❑ (상품권 혜택) 5~10% 수준의 구매할인 또는 인센티브 지급

○ 상품권 구매시 할인하여 구매하거나, 권면금액으로 구매하되 추후 캐시백을 지급하는 등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음

1) 전통시장에서 사용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2025년 3월부터 카드형과 모바일형을 통합하여 '디지털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개요]

| 구분 | 내용 |
|---|---|
| 정의 | · 자치단체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br>※「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 목적 | ·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 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각 자치단체 조례 |
| 종류 | · 지류상품권, 모바일상품권, 카드형상품권 |
| 사용처 | · 발행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가맹점<br>(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관내 자영업자·소상공인 가맹점) |
| 혜택 | · 지자체 자율로 구매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2024년 기준 5~10% 내외) |
| 발행 현황 | · 2025년 6월 기준 190개 자치단체(광역 11, 기초 179)에서 발행<br>· 발행규모 :2024년 17.6조원, 2025년 22.1조원(예상) |

자료: 행정안전부

## 2. 관련 법령 및 조례

❑ 지역사랑상품권의 발생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2020년 제정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

❑ 기타 세부적인 사항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조례로 정하고 있음

## 3.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체계

❑ 발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상품권 발행, 변경, 폐지 시 행정안전부에 신고

❑ (상품권 유통 체계)

○ 지방자치단체는 상품권 유통 및 관리를 판매대행점과 플랫폼 운영사 등에 위탁

- 지류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제작은 주로 조폐공사에 위탁하며, 판매 및 환전은 지역 내 은행 등에 위탁하고 있음

- 모바일상품권과 카드형상품권은 운영대행사가 상품권의 발행, 환전, 자금관리 등 운영 전반을 위탁하고 있으며, 주요 업체로는 한국조폐공사,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코나아이㈜, 비즈플레이, 지역 내 은행 등이 있음

○ 사용자는 판매대행점 또는 플랫폼(앱)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음

○ 가맹점은 사용된 상품권에 대해 판매대행점(지류)에 환전을 요구하고 자금을 지급받거나 운영대행사(모바일, 카드형)가 정산

❑ (가맹점 등록) 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이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점에서, 매출액 기준, 사행산업 여부 등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제한됨

○ 연매출 30억원 초과 업소, 백화점, 대형마트, 사행성 게임업소 및 유흥업소는 가맹점 등록이 제한

○ 지자체에 따라 연매출 한도를 30억원 보다 축소하여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기도 함

○ 농협 농자재판매장 및 하나로마트의 경우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었으나, 일부 면 지역 등에서는 상품권 사용이 사실상 제한이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2025년 6월부터 상품권 구매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한이 완화

❑ (구매한도, 보유한도) 2025년 6월 기준 구매한도는 1인당 최대 월 200만원(지류는 월 70만원)이며, 해당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 보유한도는 1인당 월 구매한도 200만원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

## 4.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현황

❑ (자치단체) 2025년 9월 기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수는 총 190개(광역 11/17개, 기초 179/226개)

○ 특·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도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로 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가 가능

❑ (발행액 규모) 상품권 발행액은 2024년 17.6조원이고, 2025년과 2026년은 지방자치단체 자체발행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국비지원 발행액만 각각 22조원, 24조원 예상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및 국비지원]

(단위: 개, 억원)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안 |
|---|---|---|---|---|---|---|---|---|---|
| 발행 지자체수 | 66 | 172 | 185 | 187 | 188 | 190 | 190 | 190 | 190 |
| 발행(판매)금액 | 1,264 | 31,812 | 133,216 | 235,871 | 272,196 | 209,418 | 175,769 | (미정) | (미정) |
| - 국비지원 발행액 | 1,000 | 22,573 | 95,642 | 199,199 | 183,739 | 109,639 | 85,852 | 220,000 | 240,000 |
| - 지자체 자체 발행액 | 264 | 9,239 | 37,574 | 36,672 | 88,457 | 99,779 | 89,917 | (미정) | (미정) |
| 국비지원 규모 | 100 | 884 | 6,689 | 12,522 | 7,000[1)] | 3,522 | 2,998 | 9,996 | 11,494 |

주: 1) 2022년상품권 발행비용 지원예산(1,050억원) 별도
1. 정책발행액(재난지원금, 농민수당 등 정책적으로 지급된 상품권을 말함) 제외
2. 2025년 발행 지자체수는 2025.6월 말 기준, 발행금액 및 국비지원 규모는 연간 계획 기준
3. 국비지원 발행액은 국비를 지원받아 발행한 상품권 발행액이며, 국비지원 규모는 상품권 발행에 지원한 중앙정부 예산액을 말함
4. 국비지원 규모는 상품권 발행 지원 규모로, 행정안전부 직접 사업비는 제외됨

자료: 행정안전부

❑ (유형별 발행액) 2024년 발행액 17.6조원 중 지류상품권이 1.3조원, 모바일상품권 4.3조원, 카드형상품권 12.0조원으로 카드형이 가장 많음

○ 2021~2024년 지류상품권 비중은 감소하고, 모바일상품권 비중이 증가

[상품권 유형별(지류형, 모바일, 카드형) 판매액]

(단위: 억원, %)

| 연도 | 지류형 | | 모바일 | | 카드형 | | 합계 | |
|---|---|---|---|---|---|---|---|---|
| 2021 | 32,762 | (13.9) | 39,419 | (16.7) | 163,689 | (69.4) | 235,871 | (100.0) |
| 2022 | 25,844 | (9.5) | 51,677 | (19.0) | 194,676 | (71.5) | 272,197 | (100.0) |
| 2023 | 17,521 | (8.4) | 46,149 | (22.0) | 145,749 | (69.6) | 209,419 | (100.0) |
| 2024 | 12,964 | (7.4) | 42,653 | (24.3) | 120,153 | (68.4) | 175,769 | (100.0) |

주: 1. 국비지원 및 자체발행 합산임(정책발행액 제외)
2. ( )는 상품권 유형별 비중

자료: 행정안전부

❑ (상품권 할인율) 주로 5~10%이며, 명절, 지역행사 기간 등에는 추가 할인율을 적용하기도 함

❑ (국비 지원율) 국비는 발행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며, 비율은 지역별로 차등하고 있으며, 연도별로도 조금씩 다름

○ 일반지차체(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구분

○ 연도별로는 일반지자체(비수도권) 기준 2023~2025년 1차 추경까지는 2%. 2025년 2차 추경 8%, 2026년안 5%임

[연도별 할인율, 국비 지원 비율, 지방비 최소분담율]

| 연도 | 자치단체 구분 | | 할인율 | 국비지원 비율 | 지방비 최소분담율 |
|---|---|---|---|---|---|
| 2023~2025년 (1차추경) | 일반지자체 | | 7% | 2% | 5% |
|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 | 자율 | 미지원 | 자율 |
| | 인구감소지역 | | 10% | 5% | 5% |
| 2025년 (2차추경) | 일반지자체 | 수도권 | 10% | 5% | 5% |
| | | 비수도권 | 13% | 8% | 5% |
|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 | 7% | 2% | 5% |
| | 인구감소지역 | | 15% | 10% | 5% |
| 2026년안 | 일반지자체 | 수도권 | 8% | 3% | 5% |
| | | 비수도권 | 10% | 5% | 5% |
|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 | 자율 | 미지원 | 자율 |
| | 인구감소지역 | | 12% | 7% | 5% |

주 1. 할인율은 운영지침 등에서 명시한 할인율
2.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역 고시(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89개 지역
자료: 행정안전부

## 5. 국비지원 사업 연도별 예산 현황

❑ 국비 지원 예산[2]은 연도별로 변동이 있는 편으로, 2018년 100억원에서 시작하여 2021년 1조 2,522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24년 2,998억원으로 감소함. 그리고 2025년 9,996억원, 2026년(안) 1조 1,494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및 재원]

| 연도 | 발행지원 규모 | 국비 지원예산 | |
|---|---|---|---|
| 2018 | 1,000억원 | 100억원 | 추경 60억원<br>예비비 40억원 |
| 2019 | 2.3조원 | 884억원 | 예비비 533억원<br>특교 351억원 |
| 2020 | 9.6조원 | 약 6,690억원 | 본예산 712억원<br>특교 401억원<br>추경 5,577억원 |
| 2021 | 19.9조원 | 1조 2,522억원 | 본예산 1조 522억원<br>추경 2,000억원 |
| 2022 | 18.4조원 | 8,050억원<br>(발행비용 1,050억원 포함) | 본예산 6,050억원<br>전용예산 1,000억원<br>추경 1,000억원 |
| 2023 | 11.0조원 | 3,522억원 | 본예산 3,522억원 |
| 2024 | 8.6조원 | 2,998억원 | 본예산 2,998억원 |
| 2025 | 22.0조원 | 9,996억원 | 추경 9,996억원 |
| 2026안 | 24.0조원 | 1조 1,494억원 | 예산안 1조 1,494억원 |

주: 국비 지원예산에 행정안전부 직접 사업비는 제외됨
자료: 행정안전부

2) 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예산만으로, 행정안전부 직접 사업비 예산은 제외한 금액임

# Ⅲ. 운영수수료 현황

## 1. 상품권 유형별 수수료 현황

❑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회수 등에 필요한 경비는 상품권 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 지류상품권은 상품권 제작비, 판매 및 환전 수수료, 통합관리시스템 이용료 발생

- 제작 비용: 100원/장 내외(제작 물량에 따라 다름)
- 판매 및 환전 수수료: 각각 발행액의 0.25~1.5% (합산 시 0.5~2% 범위)
- 통합관리시스템 이용료: 지류상품권 판매대행점 지점 수에 따라 청구(월 40,700원 ×12개월×지점수)

○ 모바일 및 카드형상품권은 상품권의 발행, 결제 등을 위한 플랫폼 운영비 발생

- 발행액의 0~1.1% 내외 수준에서 운영대행사와 협약
- 운영대행사와 수수료율이 0%로 협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운영대행사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결제수수료로 수익으로 대체하고 있음

[상품권 유형별 운영비 발생 비교]

| 유형 | 지류형 | 디지털형 | |
|---|---|---|---|
| | | 모바일형 | 카드형 |
| 상품권 형태 | 종이 | 핸드폰 앱 내 충전 | 실물카드<br>(선불 또는 직불카드) |
| 결제방식 | 현금과 유사 | · 핸드폰 앱 이용,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br>· 페이 등을 통한 결제 | · 실물카드 결제<br>· 페이 등을 통한 결제<br>· 발행·위탁업체에 따라 QR결제 가능 |
| 필요경비 (자치단체 부담) | · 상품권 제작 (장당 비용)<br>·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 (판매 및 환전액의 일정비율)<br>·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비용 (판매대행점 지점 수에 비례) | · 상품권 발행 및 결제, 자금이체 등을 위한 플랫폼 운영비(주로 발행액의 일정비율)<br>·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 |
| 주요대행 업체 | · 상품권 제작: 한국조폐공사<br>· 판매 및 환전: 지역 내 은행 등 금융기관 | 한국조폐공사, 코나아이, 비즈플레이, 나이스정보통신,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지역은행 등 | |
| 가맹점 부담 | 없음 | · QR결제 방식: 없음<br>· 카드 및 페이 결제: 체크카드 결제수수료 발생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지류상품권과 디지털상품권(모바일 및 카드형)의 운영비용을 단순화해서 비교해보면, 상품권 10만원 발행(1만원권 10장) 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수수료는 지류상품권이 1,500 ~ 3,000원, 디지털형상품권이 0 ~ 1,100원임

○ (주요 가정) 지류상품권 제작 비용 100원/장, 지류상품권 판매 및 환전 비용은 발행액의 0.5 ~ 2%, 디지털형상품권의 발행·운영위탁 비용은 발행액의 0 ~ 1.1%로 가정, 카드결제수수료(2025년 기준)는 0.15 ~ 1.15%

○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결제수수료까지 포함한 총비용은 지류상품권이 1,500 ~3,000원, 디지털형상품권 150 ~ 2,250원임

- 지류상품권의 경우 가맹점의 비용 부담이 없으나, 디지털형상품권은 운영대행사의 운영방식 및 결제방식에 따라 가맹점의 카드결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카드결제수수료: 10만원 결제 시 150 ~ 1,150원의 비용 발생)

[10만원 규모의 상품권 발행 시 운영 비용 (예시)]

| 유형 | 지류형 | 디지털형<br>(모바일 및 카드형) |
|---|---|---|
| 주요<br>가정 | - 1만원권 10장<br>- 상품권 제작 100원/장<br>- 판매+환전 수수료<br>: 발행액의 0.5 ~ 2% | - 발행 및 운영 위탁 수수료: 발행액의 0 ~ 1.1%<br>- 카드결제수수료: 0.15 ~ 1.15%<br>- QR결제 시 수수료: 없음 |
| 자치단체 부담(A) | 1,500 ~ 3,000원 | 0 ~ 1,100원 |
| 가맹점 부담(B) | 0 | 카드결제수수료 150 ~ 1,150원 |
| 총비용(A+B) | 1,500 ~ 3,000원 | 150 ~ 2,250원 |

주: 1. 지류형의 경우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비용(연 500~1,000만원 수준)이 발생하나 계산에서 제외함
2. 지류형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 모바일 및 카드형의 판매·운영 위탁비용은 자치단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저 수수료율과 최고 수수료율의 범위로 정함
3.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2025년 기준
(연매출 3억미만(0.15%), 3~5억(0.75%) 5~10억(0.9%), 10~30억(1.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4년 자치단체별, 상품권 유형별 운영수수료 조사결과, 상품권 발행액 10만원당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비용은 평균적으로 464원으로 추정

○ 지류상품권이 2,346원, 모바일상품권 728원, 카드형상품권 86원

- 모바일상품권과 카드형상품권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서 수수료율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움
- 그럼에도 카드형상품권의 경우 위탁대행수수료가 0원인 경우도 많아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운영수수료는 모바일상품권 운영수수료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됨

[상품권 유형별 발행액 10만원당 운영수수료(2024년 기준)]

(단위: 억원, 백만원, 원)

| | 지류형 | 모바일 | 카드형 | 가맹점수수료 지원 | 기타 | 소계 |
|---|---|---|---|---|---|---|
| 발행액(A) | 14,109 | 46,031 | 121,919 | - | - | 182,059 |
| 운영비(B) | 33,103 | 33,509 | 10,464 | 2,816 | 4,597 | 84,489 |
| 발행액 10만원당 운영 수수료(B/A) | 2,346 | 728 | 86 | - | - | 464 |

자료: 각 자치단체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비용 부담 주체와 수입 귀속 주체) 상품권 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 지류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업무를 위탁받은 지역 내 은행과 상품권 제작 업체인 한국조폐공사의 수입으로 귀속

○ 모바일과 카드형상품권의 경우 비용부담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나 결제 방식에 따라 가맹점에게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수입은 코나아이, 한국조폐공사 등 상품권 발행 및 결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대행사와 카드사에게 귀속

[지역사랑상품권 유형별 비용부담 주체 및 수수료 수입 귀속]

| 구분 | 지류형 | 디지털형 (모바일 및 카드형) |
|---|---|---|
| 비용 부담 | 자치단체 | 자치단체 (+ 가맹점*)<br>* 결제 방식에 따라 카드결제수수료 발생 |
| 수입 귀속 | - 지역 내 은행(상품권 판매 및 환전대행)<br>- 조폐공사(상품권 제작) | - 운영대행사(조폐공사, 코나아이, 나이스 등)<br>- 카드사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 자치단체별 수수료율 비교

❑ 지류상품권 발행 시 주요 비용에 해당하는 판매 및 환전수수료율은 지역별로는 각각 0.25~1.5% 범위에서 다양하며, 각각 0.5%로 협약한 경우가 다수

❑ 모바일상품권 운영수수료율은 운영대행사에 따라 상품권 발행액의 0~1.1%

○ 수수료율이 0%인 경우도 있으나, 이는 카드형상품권과 함께 운영하고 있고 운영대행사는 결제수수료를 통해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 카드형상품권의 운영수수료율은 모바일상품권과 유사한 상품권 발행액의 0~1.1%

## 3. 주요 운영대행사별 수수료 현황

❑ 운영대행사별로 수수료율의 차이가 있으나, 수수료율이 0이거나 낮은 경우 운영대행사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결제수수료로 비용을 충당

○ 즉, 수수료율이 없거나 낮으면 가맹점의 카드결제수수료가 발생하고, 수수료율이 높으면 가맹점 부담이 없거나 거의 없는 구조

[주요 운영대행사별 수수료율]

| 운영대행사 | 수수료율 | 특이사항 |
|---|---|---|
| A업체 | 판매액의 0.6~1.1% | - 모바일형과 카드형의 수수료율 산정은 동일<br>- QR결제시 가맹점 수수료 부담 없음(자치단체 계좌에서 가맹점주 계좌로 자금을 이체) |
| B업체 | 0%, 0.3% 내외, 또는 정액 | - 주로 카드사와 협약하여 상품권 결제 및 환전 등을 대행하며,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결제수수료를 카드사와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수익을 창출 |
| C업체 | 판매액의 0.77% | - 주로 모바일상품권을 위탁·운영하며, 발행규모와 상관없이 수수료율 동일<br>- 가맹점 결제수수료 없음 |
| D업체 | 판매액의 0.525~0.665% | - 서울시 협약업체로 서울시의 경우 QR결제만 가능하며, 가맹점 결제수수료 없음 |
| 지역은행 E,F,G,H | 판매액의 0.2% 이하 | - 모바일, 카드형 모두 운영하나 결제방법은 주로 카드결제 방식으로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가 발생함 |

주: 2024년 기준
자료: 자치단체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 Ⅳ. 주요 개선과제

## 1. 상품권 발행 관련

### 가.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방비 최소분담율 차등 설정 및 할인율 결정의 자율성 확대 필요

❑ 국비는 상품권 발행액의 일정 비율로 지원하며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하나, 지방비는 국비를 지원 받는 경우, 지역 구분 없이 발행액의 최소 5% 부담하도록 설계

○ 2026년 예산안 기준 국비지원율은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미지원

○ 지방비 분담율은 재정여력에 상관없이 모든 자치단체가 최소 5%를 부담

○ 2026년 국비지원을 통한 상품권 발행액을 24조원까지 확대할 계획

[할인율, 국비지원 비율, 지방비분담 비율]

| 연도 | 자치단체 구분 | | 할인율 | 국비지원 비율 | 지방비 최소분담율 |
|---|---|---|---|---|---|
| 2026년안 | 일반자치단체 | 수도권 | 8% | 3% | 5% |
| | | 비수도권 | 10% | 5% | 5% |
|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 | 자율 | 미지원 | 자율 |
| | 인구감소지역 | | 12% | 7% | 5% |

주: 할인율은 운영지침 등에서 명시한 할인율
자료: 행정안전부

[국비지원 발행액]

(단위: 억원)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안 |
|---|---|---|---|---|---|---|
| 국비지원 발행액 | 199,199 | 183,739 | 109,639 | 85,852 | 220,000 | 240,000 |

자료: 행정안전부

❑ 지역에 관계 없이 지방비 최소분담율 5%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재정력이 낮은 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액 확대에 제약 우려

○ 인구당 발행액이 높은 자치단체는 대체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 강한 정책적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즉,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비 부담이 높은 편임

○ 또한 2025년 국비 배분 계획 대비 실교부액을 비교해보면 인구감소지역에서 계획액 대비 교부액이 감소하였는데,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역이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사업을 설계했음에도 실제로는 지방비 대응여력의 부족으로 계획한 만큼의 발행을 하지 못하고 행정안전부의 계상 대비 적게 받았다는 것을 의미

❑ 따라서 낙후된 지역의 할인율을 제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국비지원 차등 설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자치단체별로 지방비 부담 여력의 차이가 있으므로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지방비 최소분담율 또한 차등화하고, 자치단체가 상품권 운용 방향,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할인율을 일정 수준 이상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

**나. 유효기간 만료 상품권에 대한 처리방법의 일관성 확보 및 유효기간 만료전 상품권 소진을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의 처리에 대해 만료 후 세입처리, 유효기간 연장, 자동환불 등 자치단체별로 처리방법이 다른 것으로 조사됨

○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2020년 이전에 발행한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됨

○ 만료된 상품권에 대해 자치단체별로 만료 및 세입 처리, 충전 잔액 자동 환불 및 캐시백 소멸 처리, 유효기간 연장 등 처리방법이 다양함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기준 등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아울러 유효기간 만료 전 상품권이 소진될 수 있도록 사용 촉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고, 다른 지역에 대한 정보도 쉽게 알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 소비자를 기준으로 차별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간 기준을 통일하는 등 표준화된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할 필요

### 다. 부정유통 관리 감독 강화 필요

❑ 국고 지원 확대에 따른 할인율 상향으로 부정유통에 대한 유인이 증가할 수 있으며 최근 3년간('22~'24년) 부정유통 단속 결과 적발사례가 증가하고 유형이 다양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면밀한 유통체계 구축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

○ 국비지원 확대로 발행액이 증가하고, 구매한도 또한 2025년 6월부터 확대됨

- 국비지원 발행액: 2024년 859억원 → 2025년 22.1조원 → 2026년 24조원
- 구매한도: 2025년 6월부터 월 70만원에서 월 200만원 이내로 상향

○ 발행규모가 확대되고 할인율이 상향된 상황에서 1인당 1회 구매한도가 높아지면 정책의도와 달리 일부에서는 부정유통의 유인이 발생할 수 있음

- 최근 3년간 ('22~'24년)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
- 기타 유형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형태로 부정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새로운 유형의 부정유통이 증가하는 데 주의할 필요

[2022~2024년 부정유통 일제단속 결과 유형별 적발건수]

(단위: 건)

| 연도 | 부정수취·불법환전 | 제한업종 | 결제거부 | 기타 | 합계 |
|---|---|---|---|---|---|
| 2022 | 132 | 45 | - | 7 | 184 |
| 2023 | 48 | 14 | 48 | 84 | 194 |
| 2024 | 121 | 13 | 33 | 104 | 271 |

주: ① 부정수취·불법환전: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아 현금화하는 '깡' 행위, ② 제한업종: 상품권 사용이 금지된 업종에서 상품권을 받은 경우, ③ 결제거부: 가맹점이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과 차별대우한 경우, ④ 기타: 가맹점 등록 업종 외 상품 판매, 선결제 및 외상값 일괄 결제 등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결과와 비교해도 적발 실적이 높지 않고, 190개 자치단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별로 단순 계산하면 자치단체별 적발 실적은 1건 내외에 불과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결과 2024년 143건 적발
-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은 연 4~5조원 수준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20~25% 수준
- 1인당 구매한도는 비슷한 수준이나, 할인율이 지역사랑상품권이 더 높은 편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및 할인율 상향에 따라 부정거래 및 부정편익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

## 2. 운영수수료 관련

### 가. 운영수수료에 대한 정보 공유 필요

❑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품권 발행 및 운영과 관련한 정보들이 공개 또는 공유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모바일상품권 및 카드형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한 수수료율은 운영대행사가 같을 경우 지역별로 차이가 거의 없음. 다만, 운영대행사별로 수수료율이 다른데, 이는 발행규모나 가맹점의 결제수수료 징수 여부 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임

○ 지류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율은 판매(환전)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고 있는데, 2024년 기준 최소 0.25%에서 최대 1.5%(판매+환전시 0.5~2% 범위)로 최대 6배 가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나. 가맹점의 결제수수료 부담에 대한 완화 방안 모색 필요

❑ 상품권 유형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가 달라지는데, 가맹점 수수료 지원, 결제수수료 부담이 없는 QR 결제 홍보, 카드결제수수료율 인하 협상 등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 필요

○ 지류상품권은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수수료)이 전액 자치단체 부담인데, 모바일과 카드형상품권의 경우 운영대행사와 협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맹점에게도 수수료 부담이 발생

- 지류상품권 발행 비중이 감소하고 모바일 및 카드형상품권 발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자치단체 부담이 가맹점에게 전가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지역사랑상품권 유형별 비용부담 주체 및 수수료 수입 귀속]

| 구분 | 지류형 | 디지털형<br>(모바일 및 카드형) |
|---|---|---|
| 비용 부담 | 자치단체 | 자치단체 (+ 가맹점*)<br>* 결제 방식에 따라 카드결제수수료 발생 |
| 수입 귀속 | - 지역 내 은행(상품권 판매 및 환전대행)<br>- 조폐공사(상품권 제작) | - 운영대행사(조폐공사, 코나아이, 나이스 등)<br>- 카드사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3. 자금관리 관련

### 가.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 여부 관리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동 조항은 상품권 이용자가 선불로 지급한 예탁금이 안정적으로 보관·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10월 신설(2022년 4월 시행)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조사 결과, 일부 자치단체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강행규정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

### 나. 이자수입의 처리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마련 필요

❑ 상품권 소비자로부터 선불로 받은 예탁금을 자치단체 계좌에 보관하면서, 발생한 이자를 별도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음

○ 행정안전부의 지침에는 “관련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귀속(세외수입), 차년도 상품권 발행 사업에 활용”하도록 명시

○ 상당수 자치단체가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고 하였으나, 일부 자치단체는 상품권 계좌에 단순 보관하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는 이자수입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이는 자금처리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재하고, 중앙부처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상품권 운영 자금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

## Ⅴ. 결론 및 시사점

❑ 상품권 발행 및 운영 관련, 운영수수료, 자금관리 실태 등을 분석하였으며,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

❑ 국비 지원 시 지방비 최소분담율 차등 설정 필요

○ 국비 지원율은 지역별로 차등(미지원, 3%, 5%, 7%)하고 있으나, 지방비 최소분담율을 모든 지역에 5%로 동일하게 적용

○ 그러나 자치단체별로 지방비 부담 여력의 차이가 있으며,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들은 지방비 최소분담율(5%)이 상품권 발행 확대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음

-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지방비 분담율과 발행규모는 상충관계

○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방비 최소분담율 차등 설정 및 할인율 설정의 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필요

❑ 발행 및 운영 관리체계 정비 필요

○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가 가능할 정도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보편화되었으나,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이 자치단체별로 시행됨에 따라 위탁 운영 수수료가 제각각이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도 부재

- 지류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율은 0.25~1.5%로 최대 6배 가량 차이

○ 자금보유현황 공개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은 자치단체가 있고, 이자 처리에 있어서도 세입처리하지 않고 통장에 방치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

○ 국비 지원이 의무화된 만큼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국비를 배분하는 수준을 넘어, 각 자치단체가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

# Ⅰ 개 요

##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지역사랑상품권은 1996년 강원도 화천군과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도입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1] 중 190개 자치단체(광역 11개, 기초 179개)에서 발행되고 있다. 특·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도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로 발행하고 있으며, 사실상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연간 발행규모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약 20조원에 달하며 국비 투입만 2025년 1조원, 2026년 예산안 기준 1조 1,500억원에 이른다.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지방비까지 포함할 경우 정부재정 투입은 2조원이 넘는다.

이와 같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이 지자체별로 시행됨에 따라 판매대행이나 운영위탁 등에 따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것으로 파악되나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없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상품권 발행액, 국비지원액 등은 파악하고 있으나, 상품권 판매 및 환전대행점, 발행 및 운영 위탁업체 등에 지급하는 비용(수수료)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지 않아 상품권 발행 등 위탁업체 등과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각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운영·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기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류상품권 판매대행점과 모바일 및 카드형상품권 발행·운영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중심으로 보다 세밀히 검토하고자 하였다.

---

1) 광역자치단체(시·도) 17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226개

## 2 보고서의 구성과 평가 방법

보고서의 구성은 지역사랑상품권 현황을 살펴보고,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한 수수료 지급 현황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관리체계 관련 주요 개선과제를 검토하였다.

첫째, 상품권 현황에서는 상품권 유형별(지류/모바일/카드형) 운영 체계, 자치단체별·연도별·유형별 상품권 발행 현황과 자치단체별 할인율, 국비 지원 등을 기술하였고, 둘째, 운영수수료 현황에서는 상품권 유형별·지자체별·주요 운영대행사별로 수수료 현황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요 개선과제에서는 이러한 현황과 운영수수료 조사를 바탕으로 상품권 발행, 운영수수료, 자금관리 측면에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분석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구성 | 주요 분석 내용 |
|---|---|
| Ⅰ. 개요 | ◦ 분석의 배경 및 목적<br>◦ 보고서의 구성과 분석 방법 |
| Ⅱ.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 ◦ 지역사랑상품권 개요<br>◦ 관련 법령 및 조례<br>◦ 운영 체계<br>- 상품권 유형별 운영체계, 발행·운영 위탁업체 현황<br>◦ 발행 현황<br>- 상품권 발행 지자체 현황, 연도별·유형별 발행액, 할인율, 국비지원율<br>◦ 국비지원 사업 연도별 예산 현황 |
| Ⅲ. 운영수수료 현황 | ◦ 상품권 유형별 수수료 현황<br>◦ 지자체별 수수료 현황<br>◦ 주요 운영대행업체별 수수료 현황 |
| Ⅳ. 주요 개선과제 | ◦ 상품권 발행 관련<br>◦ 운영수수료 관련<br>◦ 자금관리 관련 |
| Ⅴ. 결론 및 시사점 | ◦ 종합제언 |

분석을 위해 상품권 발행 현황, 운영비 등을 조사하였고, 조사한 자료와 함께 각종 통계 및 정부 자료, 국내·외 문헌 등을 활용하여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비용을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자료수집은 지역사랑상품권 총괄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상품권 발행 주체인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활용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누리상품권 운영비 현황 등의 자료도 제출받아 비교·분석에 활용하였다.

# II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 1 지역사랑상품권 개요

### 가. 지역사랑상품권 개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소지자가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한 상품권[2]으로 정의되며,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자치단체별로 00상품권, 00화폐, 00페이, 00카드 등으로 명칭하기도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크게 지류형, 모바일형, 카드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지류형은 종이로 제작된 상품권을 말하고, 모바일형은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및 결제를 위해 개발된 앱을 통해 상품권을 발행하고 결제하는 방식이다. 카드형은 체크카드와 같은 실물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카드형상품권을 구매하였더라도 모바일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추세이며, 모바일상품권의 경우도 일부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3]

---

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3) 전통시장에서 사용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2025년 3월부터 카드형과 모바일형을 통합하여 '디지털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유형]

| 구분 | 지류형(종이) | 모바일형(앱) | 카드형(체크카드) |
|---|---|---|---|
| 구매방법 | 지역 내 은행 등에서 구매 가능 | chak, 서울페이 등 각 지역별 모바일상품권 발급을 위해 개발한 앱에서 구매 가능 | 카드사, 지자체 앱 등 |
| 사용방법 (결제방법) | 지류상품권 제출 | QR 결제(가맹점에 비치된 QR 스캔, 금액입력, 결제버튼), 삼성페이 등과 연동하여 결제 | 체크카드 단말기에 결제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역사랑상품권은 상품권을 발행한 자치단체에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주로 관내 자영업자·소상공인 가맹점이 주요 사용처가 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제외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가장 큰 혜택은 구매할인 또는 인센티브 지급이라 할 수 있다. 상품권 구매 시 할인하여 구매하거나, 권면금액으로 구매하되 추후 캐시백을 지급하는 등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할인율은 지역별로,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데, 주로 5~10% 할인율[4]이 적용된다.

2025년 9월 말 기준, 11개 광역자치단체와 17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발행규모는 2024년에는 17.6조원이었고, 2025년에는 22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5]

4) 할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통해 부정유통 방지 등을 위해 10%를 초과하는 할인율은 지양하되, 범국가적 소비 진작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외적인 경우(명절, 지역축제기간 등) 10%를 초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2025년 국비지원 발행규모만 22조원으로 예상된다.(지자체 자체발행액은 미정)

[지역사랑상품권 개요]

| 구분 | 내용 |
|---|---|
| 정의 | · 자치단체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br>※「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 목적 | ·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 근거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 지자체가 사업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br>· 예산 집행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안내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행정안전부)<br>* 보조율 준수, 1인당 月 구매한도 설정, 운영자금 적정관리 등 |
| 종류 | · 지류상품권, 모바일상품권, 카드형상품권 |
| 사용처 | · 발행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가맹점<br>(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관내 자영업자·소상공인 가맹점)<br>※ 사행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제외, 조례로 가맹 업종 제한 가능 |
| 혜택 | · 지자체 자율로 구매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2024년 기준 5~10% 내외) |
| 발행 현황 | · 2025년 6월 기준 190개 자치단체에서 발행<br>(11개 광역자치단체 및 179개 기초자치단체)<br>· 발행규모 :2024년 17.6조원, 2025년 22조원 이상(예상) |

자료: 행정안전부

### 나. 지역사랑상품권 주요 연혁

우리나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시작은 1996년 강원도 화천군과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지역 내에서 이용가능한 상품권을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보고 있으며, 이후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자치단체가 꾸준히 증가하여 2025년 6월 현재에는 190개 지자체(광역 11개, 기초 179개)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그리고 2025년에는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동구·남구, 대전광역시 중구, 강원도 양양 등에서도 금년 내 상품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초기에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발행·운영하였는데,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축제 등에 활용하면서 자치단체 행정구역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형태로 도입되었다.[6] 이후 2018년 군산·거제 등 고용위기지역에 중앙정부가 100억원을 지원하면서 국비 지원이 시작되었고, 국비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수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2020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5.1.)되었고,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자치단체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2025년에는 국비 지원 의무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8.26.)되어, 2026년도 예산부터는 국비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연혁]

| 연도 | 내용 |
|---|---|
| 1996 | · 상품권 발행 시작(강원 화천, 충북 괴산)<br>· 성남('06.12., '성남사랑상품권'), 군산('18.9., '군산사랑상품권')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발행·운영 |
| 2018 | · 국비 지원 시작(군산·거제 등 고용위기지역 국비 100억원 지원) |
| 2019 | · 전국적으로 사업 시행 |
| 2020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2020.5.1.) 및 시행(2020.7.2.) |
| 2025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2025.8.26.)으로 국비 지원 의무화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을 바탕으로 작성

6) 류민정(2023), 「지역사랑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정성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8권 제2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주: 개정일 2025.8.26., 시행일 2026.1.1.
자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 관련 법령 및 조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2020년 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들은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조례로 정하고 있다. 상품권의 발행주체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총괄부처로 예산 집행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고려사항[7] 안내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상품권 유효기간, 상품권 운영 자금의 공개,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 발행실적 제출, 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25년 8월에는 국비지원 의무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에 따라 국비지원은 2026년도 예산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등은 2026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통지역, 가맹점의 자격요건 및 등록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들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5년 6월 현재 상품권을 발행·운영하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상품권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

7) 보조율 준수, 1인당 月 구매한도 설정, 운영자금 적정관리 등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내용 | 비고 |
|---|---|
| 제1조(목적)<br>· 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 |
| 제3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등)<br>·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2025.8.26.<br>신설 |
|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br>· 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 | |
|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br>· 상품권운영자금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운영<br>·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 |
|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br>· 상품권 결제 거절 및 불리한 대우 금지 등 | |
|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br>· 상품권 재판매 금지 등 | |
| 제14조(발행실적 등의 제출)<br>·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 |
|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br>· 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2025.8.26.<br>개정 |
| 제1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br>· 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 2025.8.26.<br>개정 |

## 3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체계

### 가. 상품권 종류별 운영 체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우선 상품권 발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상품권 발행을 행정안전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 폐지 시에도 행정안전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품권 유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판매대행점과 발행 및 운영 위탁 업체(운영대행사)와 협약하여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데이터 관리 등을 위탁하며, 사용자(시민)는 판매대행점 또는 플랫폼(앱)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는 가맹점에서 물건 등을 구매하고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사용된 상품권에 대해 판매대행점(지류)에 환전을 요구하고 자금을 지급받거나 운영대행사(모바일, 카드형)가 정산하는 구조이다.

상품권의 유통과정은 상품권 유형별(지류·모바일·카드형)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① 지류상품권은 종이로 된 상품권을 말하며, 운영 방식은 지자체가 상품권 유통을 위해 조폐공사에 의뢰하여 지류상품권을 제작하고, 제작된 상품권을 은행 등 판매대행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소비자는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지류상품권을 결제대금으로 받은 업체(가맹점)는 판매대행점에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지류상품권 운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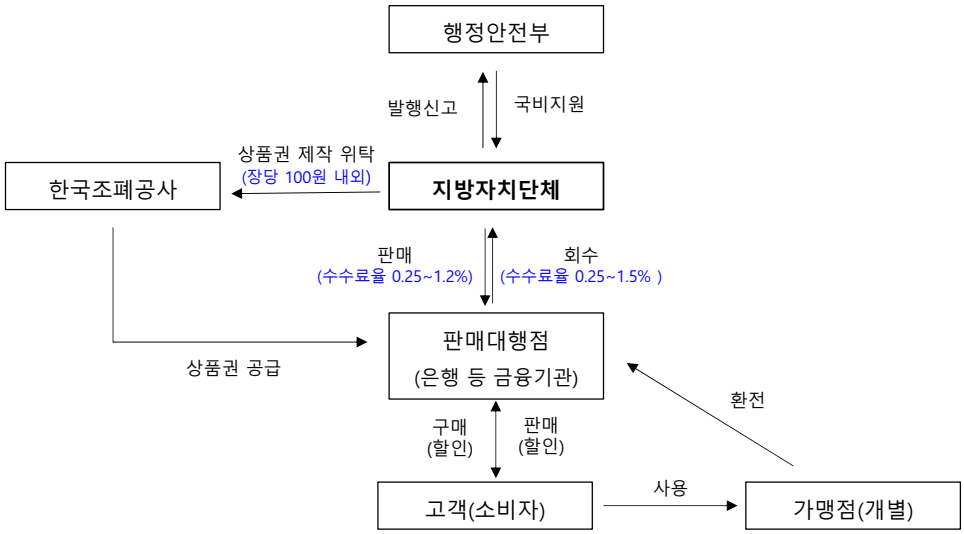


주: 수수료율은 2024년 각 자치단체가 판매대행점과 협약한 최소 및 최대 수수료율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② 카드형은 체크카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실물카드를 발급받고 발급받은 카드로 결제하면 지자체가 결제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해당 지자체와 협약한 발행 및 운영 위탁업체(운영대행사)에서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가까운 금융기관(농협 등)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충전하여 사용하며,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지역 내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다.

③ 모바일형은 지방자치단체가 협약한 발행 및 운영 위탁업체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충전하는 방식으로, 결제 방식은 위탁·대행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다. QR결제와 페이 등을 이용한 결제 방식이 있는데, QR결제의 경우 가맹점에서 QR코드(Quick Response Code)를 스캔하고 금액을 입력하면 결제되는 방식[8] 이고, 페이 방식은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9]을 말한다. QR결제 방식은 결제와 동시에 소비자에게 충전되어 있던 금액이 인출되어 가맹점에 계좌이체를 통해 정산되는 방식이고, 페이 방식은 협약된 카드사에 돈을 지급하고 카드사가 가맹점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8) 대표적으로 한국조폐공사, 비즈플레이는 QR 결제 방식이다.

9) iM뱅크는 QR결제도 제공하지만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결제도 가능하다.

[모바일상품권 및 카드형상품권 운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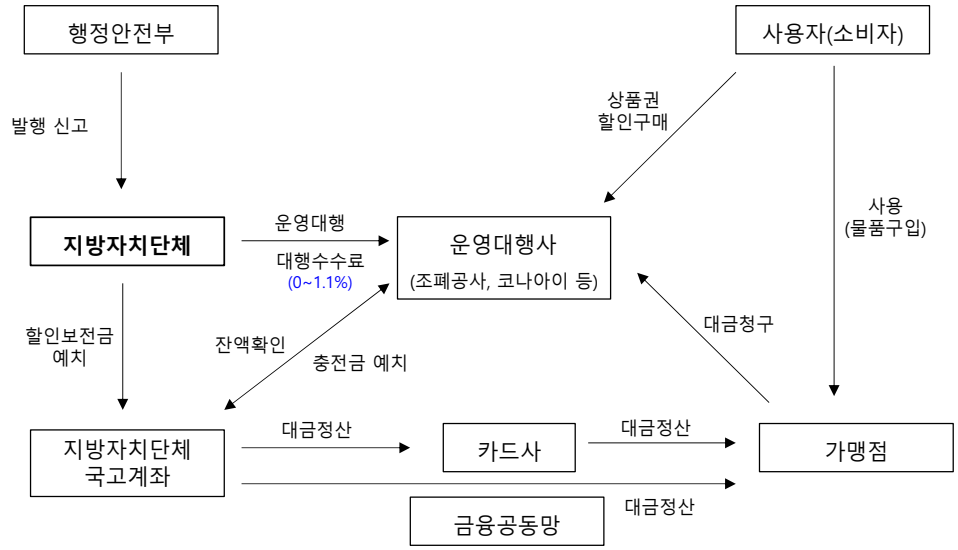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최근에는 카드형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더라도 운영대행사에서 모바일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QR 결제를 함께 운영하고 있고,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더라도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거나 페이 등에 등록하여 카드결제와 유사하게 결제가 가능한 경우도 다수 있다. 즉, 지류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 카드형상품권의 차이는 상품권 발행 형태의 차이이며, 결제방식이나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카드형과 모바일형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10)]

10)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의 경우도, 지류형(2009년~), 모바일형(2019.9~), 카드형(2022.8~)으로 구분하였으나, 2025년 3월부터 카드와 모바일을 통합하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통합·운영하고 있다.

### 나. 상품권 종류별 발행 및 운영 위탁업체 현황

상품권 제작 및 판매, 환전, 자금관리시스템 운영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업체(이하 운영대행사)로는 한국조폐공사,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농협, 비즈플레이, 코나아이 등이 있다.

상품권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지류상품권을 발행 및 운영하기 위해서는 ①상품권 제작, ②판매 및 환전, ③판매 및 환전실적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자금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지류상품권 제작은 모든 자치단체가 한국조폐공사에 위탁하고 있고, 판매 및 환전은 주로 지역 내 은행 등에 협약을 통해 위탁하고 있다. 자금관리시스템의 경우 민간업체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대여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지류상품권을 발행하는 111개 자치단체 중 86개 자치단체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는 주로 카드 또는 모바일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탁한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농협, 나이스, ITSNG, 코나아이, iM뱅크, KIS 등이 있다.[11)]

모바일상품권과 카드형상품권은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탁하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한데, 플랫폼을 운영하는 위탁업체 1곳과 협약하면 된다.

주요 업체를 살펴보면,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발행하는 자치단체 수는 119개로 이 중 53개 자치단체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하고 있고, 27개 자치단체는 비즈플레이에, 20개 자치단체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그 외 코나아이, 나이스, 인조이웍스 등의 업체들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카드형상품권은 138개 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카드형상품권 또한 한국조폐공사가 64개 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코나아이가 52개, 나이스가 9개 등으로 조사되었다.

11) 2025년 9월 기준

[상품권 종류별 운영대행사 현황]

| 지류형 | | 모바일형 | | 카드형 | |
|---|---|---|---|---|---|
| 대행업체명 | 지자체수 | 대행업체명 | 지자체수 | 대행업체명 | 지자체수 |
| 조폐공사 | 86 | 조폐공사 | 53 | 조폐공사 | 64 |
| 농협 | 10 | 비즈플레이 | 27 | 코나아이 | 52 |
| 나이스 | 7 | 결제진흥원 | 20 | 나이스 | 9 |
| ITSNG | 3 | 코나아이 | 7 | 광주은행 | 2 |
| 코나아이 | 2 | 나이스 | 6 | KT | 2 |
| iM뱅크 | 1 | 인조이웍스 | 2 | 농협 | 2 |
| KIS | 1 | iM뱅크 | 2 | iM뱅크 | 2 |
| | | KIS | 1 | KIS | 1 |
| | | 부산은행 | 1 | 부산은행 | 1 |
| | | | | 비즈플레이 | 1 |
| | | | | 인조이웍스 | 1 |
| | | | | 전북은행 | 1 |
| 합계 | 111 | 합계 | 119 | 합계 | 138 |

주: 2025년 9월 기준
자료: 각 자치단체 제출자료

### 다. 가맹점 등록 기준

지역사랑상품권은 상품권을 발행한 자치단체에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이 지역 내 소비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점에서, 매출액 기준, 사행산업 여부 등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

가맹점 등록 기준을 살펴보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2]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초과 업소는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13] 다만, 예외적으로 ① 농민수당·아동수당,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② 로컬푸드 직매장 등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플랫폼 사업장, ③ 민간 농자재판매소가 없는 면 지역 내 농협 농자재판매장, ④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에 포함되는 가맹점이 없는 면 지역 내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즉,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쇼핑센터와 기업형 슈퍼마켓(GS슈퍼마켓, 롯데슈퍼, 킴스클럽마트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사행성 게임업소 및 유흥업소는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다만, 농협 농자재판매장 및 하나로마트의 경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2025년 상반기까지는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었으나, 일부 면 지역 등에서는 상품권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2025년 6월부터 상품권 구매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한이 완화되었다.

---

12)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유통 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 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3) 연매출 30억원 초과 업체의 가맹점 등록 제한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원칙으로, 자치단체별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 경기도의 경우 전통시장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점포도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나, 소매점, 음식점, 학원 등의 업종은 연매출 12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로 제한하고 있다. (병원, 약국, 지역서점 등 일부 업종은 30억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원칙)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 제한
(예외) 다만,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점 등록 가능
① 정책적 필요에 따른 현금성 지원 등을 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경우
* (예시) 농민수당·아동수당,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등 정책발행 상품권
② 로컬푸드직매장 등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플랫폼사업장
-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판매자'인 개별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플랫폼형 사업장은 예외 인정
※ 매장 자체는 비영리 성격, 개별 농민·소상공인이 직접 수익을 취하는 경우여야 함
③ 민간 농자재판매소가 없는 면 지역('25.6월 기준) 內 농협 농자재판매장
④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유형 분류상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에 포함되는 가맹점이 없는 면 지역('25년 6월 기준) 內 농협 하나로마트

자료: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2025.6.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현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어 있다

### 라. 구매한도 및 보유한도

지역사랑상품권은 권면금액 대비 할인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2025년 6월 기준 구매한도는 1인당 최대 월 200만원이며, 해당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는 2024년 구매한도 월 70만원에서 2배 이상 확대된 수준이다. 다만, 지류상품권 경우 부정유통 등의 사례가 많아 구매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월 7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14]

14)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지자체의 경우, 구매한도 대신 캐시백 지급 한도를 두는데, 캐시백 방식으로 상품권 할인을 지원하는 인천광역시, 경북 경주시 등은 월 30만원(사용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 인천e음 홈페이지(https://incheoneum.or.kr/)
- 경주페이 홈페이지(https://www.gyeongju.go.kr/area/page.do?mnu_uid=2904&)

상품권 축적 후 미사용 또는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 행태를 억제하기 위하여 보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보유한도는 1인당 월 구매한도 200만원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환전 한도도 있는데 지류형의 경우 물품 등의 대금으로 상품권을 수령한 가맹점은 판매대행점에서 환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에서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가맹점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환전 한도를 설정하고 관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1인당 구매한도 및 1인당 보유한도, 환전한도]

| 구분 | 기존 | 2025년 6월 부터 |
|---|---|---|
| 1인당 구매한도 | · 월 7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자체별 자율 결정<br>· 명절 등 한도 상향이 필요한 경우 1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행정안전부 사전 협의)<br>· 필요시 연 구매한도 설정 가능 | · 월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 자율 결정(지류형은 월 70만원 한도)<br>· 필요시 연 구매한도 설정 가능 |
| 1인당 보유한도 | · 1인당 최대 15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자체별 자율 설정 | · 1인당 월 구매한도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 자율 설정 |
| 환전한도 | ·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가맹점 매출액 등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환전한도 설정 및 관리 | ·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가맹점 매출액 등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환전한도 설정 및 관리 |

자료: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2025.6.

## 4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현황

### 가. 상품권 발행 자치단체 현황

2025년 6월 기준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지자체 수는 총 190개(광역 11개, 기초 179개)로, 이들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2025년 상품권 발행액은 22조원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주로 특·광역시(특별자치시 포함)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고, 도는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시·군)에서 발행하고 있다.

특·광역시 중 일부 자치구는 기초자치단체지만 발행하고 있고, 도 단위 중에서도 광역자치단체지만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와 부산광역시 동구와 남구, 인천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중구는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발행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와 경상남도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양양 제외)에서 상품권을 발생하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이들 지역들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모두 구매가능한 지역들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자치단체(광역, 기초) 현황]

| 구분 | 발행 | 미발행 |
|---|---|---|
| 서울 | 서울특별시, **서울 25개 자치구** | |
| 부산 | 부산광역시, **동구, 남구** | 14개 지자체 |
| 대구 | 대구광역시 | 9개 지자체 |
| 인천 | 인천광역시, **동구** | 9개 지자체 |
| 광주 | 광주광역시 | 5개 지자체 |
| 대전 | 대전광역시, **중구** | 4개 지자체 |
| 울산 | 울산광역시 | 5개 지자체 |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 |
| 경기 |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이천, 구리,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 경기(광역) |
| 강원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양양 |
| 충북 |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충북(광역) |
| 충남 |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충남(광역) |
| 전북 |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 전북(광역) |
| 전남 |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 전남(광역) |
| 경북 |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 경북(광역) |
| 경남 | **경상남도**,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 |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 |

주: 1. 2025년 6월 기준
2. 볼드는 특·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자치구) 발행 또는 도에서 발행하는 자치단체임
3. 대전광역시 중구는 2025년 6월부터 발행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나. 상품권 발행액

상품권 발행규모는 연간 20조원 내외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2022년까지는 매년 증가하였으나, 2023년과 2024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2025년과 2026년에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상품권 발행규모는 17.6조원으로, 2025년과 2026년은 지자체 자체발행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국비 지원 발행액만 각각 22조원, 24조원으로 2024년 발행규모 보다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상품권 발행액은 국비 지원이 있는 발행액(국비 지원 발행액)과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발행액(지자체 자체 발행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24년 기준 전체 발행액 17.6조원 중 국비지원을 받아 발행한 규모가 8.6조원, 국비 지원 없이 자체 발행한 규모가 9.0조원이다. 2022년까지는 국비 지원 발행액이 지자체 자체 발행액보다 두 배 이상 많았으나, 2023년과 2024년에는 격차가 크게 축소되어 유사한 규모로 발행되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및 국비지원]

(단위: 개, 억원)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안 |
|---|---|---|---|---|---|---|---|---|---|
| 발행 지자체수 | 66 | 172 | 185 | 187 | 188 | 190 | 190 | 190 | 190 |
| 발행(판매)금액 | 1,264 | 31,812 | 133,216 | 235,871 | 272,196 | 209,418 | 175,769 | (미정) | (미정) |
| - 국비지원 발행액 | 1,000 | 22,573 | 95,642 | 199,199 | 183,739 | 109,639 | 85,852 | 220,000 | 240,000 |
| - 지자체 자체 발행액 | 264 | 9,239 | 37,574 | 36,672 | 88,457 | 99,779 | 89,917 | (미정) | (미정) |
| 국비지원 규모 | 100 | 884 | 6,689 | 12,522 | 7,000[1)] | 3,522 | 2,998 | 9,996 | 11,494 |

주: 1) 2022년 상품권 발행비용 지원예산(1,050억원) 별도
1. 정책발행액(재난지원금, 농민수당 등 정책적으로 지급된 상품권을 말함) 제외
2. 2025년 발행 지자체수는 2025.9월 말 기준, 발행금액 및 국비지원 규모는 연간 계획 기준
3. 국비지원 발행액은 국비를 지원받아 발행한 상품권 발행액이며, 국비지원 규모는 상품권 발행에 지원한 중앙정부 예산액을 말함
4. 국비지원 규모는 상품권 발행 지원 규모로, 행정안전부 직접 사업비는 제외됨

자료: 행정안전부

[2018~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현황]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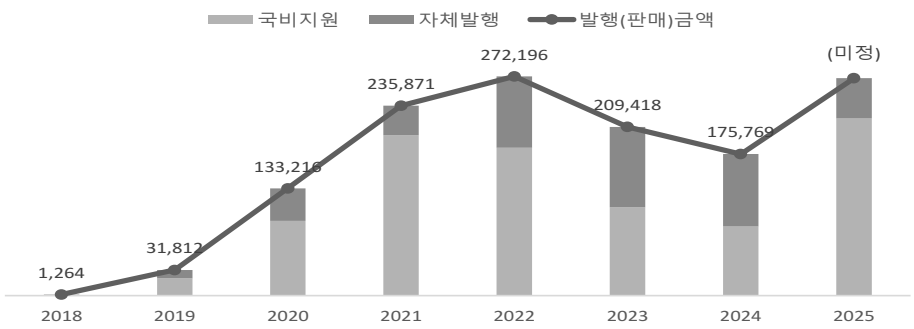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다. 유형별 발행액

2021~2024년 연도별 발행 현황을 비교해보면, 지류는 2021년 13.9%에서 2024년 7.4%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모바일은 2021년 16.7%에서 2024년 24.3%로 증가 추세이다. 카드형은 68.4~71.5%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상품권 유형은 카드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류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모바일로 대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품권 유형별(지류형, 모바일형, 카드형) 판매액]

(단위: 억원, %)

| 연도 | 판매액합계 | 유형별 판매액 | | |
|---|---|---|---|---|
| | | 지류형 | 모바일형 | 카드형 |
| 2021 | 235,871<br>(100.0) | 32,762<br>(13.9) | 39,419<br>(16.7) | 163,689<br>(69.4) |
| 2022 | 272,197<br>(100.0) | 25,844<br>(9.5) | 51,677<br>(19.0) | 194,676<br>(71.5) |
| 2023 | 209,419<br>(100.0) | 17,521<br>(8.4) | 46,149<br>(22.0) | 145,749<br>(69.6) |
| 2024 | 175,769<br>(100.0) | 12,964<br>(7.4) | 42,653<br>(24.3) | 120,153<br>(68.4) |

주: 국비지원 및 자체발행 합산임(정책발행액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 라. 인구당 발행액, 인구당 국비지원액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 주민뿐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들도 구매가 가능하지만, 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구매한다는 가정하에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1인당 발행액을 비교해 보았다.

1인당 발행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 청송군으로 인구당 발행액이 264.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이 전북 익산시로 인구당 발행액은 174.5만원이고, 충북 옥천군, 전남 해남군, 강원 태백시, 경북 울진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발행액이 적은 지역은 경기도 고양시가 8.8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경기도 의정부시 9.0만원, 경남 창원시,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순으로 조사되었다.

[인구당 발행액]

(단위: 백만원, 명, 만원/명, %)

| 광역 | 기초 | 발행액 (A) | 국비 (B1) | 지방비 (B2) | 소계 (B1+B2) | 주민등록 인구 (C) | 재정 자립도 | 인구당 발행액 (만원/명) | 인구당 국비지원 (만원/명) |
|---|---|---|---|---|---|---|---|---|---|
| [인구당 발행액 상위 5개 지역] | | | | | | | | | |
| 경북 | 청송 | 62,705 | 1,961 | 4,309 | 6,270 | 23,716 | 7.4 | 264.4 | 8.3 |
| 전북 | 익산 | 467,609 | 13,631 | 31,612 | 45,243 | 268,001 | 14.7 | 174.5 | 5.1 |
| 충북 | 옥천 | 80,785 | 5,983 | 5,095 | 11,078 | 48,204 | 11.3 | 167.6 | 12.4 |
| 전남 | 해남 | 98,828 | 3,145 | 8,560 | 11,705 | 63,120 | 7.8 | 156.6 | 5.0 |
| 강원 | 태백 | 58,600 | 2,506 | 3,570 | 6,076 | 37,936 | 14.0 | 154.5 | 6.6 |
| [인구당 발행액 하위 5개 지역] | | | | | | | | | |
| 대전 | - | 164,497 | 2,014 | 6,000 | 8,014 | 1,439,157 | 41.7 | 11.4 | 0.14 |
| 서울 | - | 940,350 | 0 | 47,018 | 47,018 | 9,331,828 | 74.0 | 10.1 | 0.0 |
| 경남 | 창원 | 98,982 | 1,382 | 7,423 | 8,805 | 999,858 | 30.6 | 9.9 | 0.14 |
| 경기 | 의정부 | 41,359 | 0 | 2,386 | 2,386 | 461,271 | 23.2 | 9.0 | 0.0 |
| 경기 | 고양 | 94,063 | 1,759 | 4,397 | 6,156 | 1,070,120 | 33.7 | 8.8 | 0.16 |

주: 1. 2024년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통합재정자립도는 시 32.7, 군 14.3, 자치구 24.5임
2. 경기도 의정부는 2024년 국비 지원을 받지 않았음
자료: 각 자치단체 제출자료 및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당 국비지원액이 높은 지역은 충북 옥천으로 1인당 12.4만원의 국비지원액을 받았다. 다음이 충북 영동 10만원/인, 전북 무주 8.4만원/인, 경북 청송 8.3만원/인, 전남 강진 7.5만원/인 순이다. 충북 옥천군과 영동군은 2024년 수해로 긴급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국비 3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인구당 국비지원율이 높게 나타났다.

[인구당 국비지원액]

(단위: 백만원, 명, 만원/명, %)

| 광역 | 기초 | 발행액 (A) | 국비 (B1) | 지방비 (B2) | 소계 (B1+B2) | 주민등록 인구 (C) | 재정 자립도 | 인구당 발행액 (만원/명) | 인구당 국비지원 (만원/명) |
|---|---|---|---|---|---|---|---|---|---|
| 충북 | 옥천 | 80,785 | 5,983 | 5,095 | 11,078 | 48,204 | 11.3 | 167.6 | 12.4 |
| 충북 | 영동 | 37,499 | 4,355 | 1,355 | 5,710 | 43,551 | 9.7 | 86.1 | 10.0 |
| 전북 | 무주 | 34,590 | 1,925 | 1,920 | 3,845 | 23,032 | 8.1 | 150.2 | 8.4 |
| 경북 | 청송 | 62,705 | 1,961 | 4,309 | 6,270 | 23,716 | 7.4 | 264.4 | 8.3 |
| 전남 | 강진 | 41,127 | 2,400 | 2,498 | 4,898 | 32,189 | 7.8 | 127.8 | 7.5 |
| 강원 | 태백 | 58,600 | 2,506 | 3,570 | 6,076 | 37,936 | 14.0 | 154.5 | 6.6 |
| 전북 | 남원 | 111,000 | 4,295 | 6,705 | 11,000 | 75,647 | 8.7 | 146.7 | 5.7 |

주: 2024년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통합재정자립도는 시 32.7, 군 14.3, 자치구 24.5임
자료: 각 자치단체 제출자료 및 국가통계포털(KOSIS)

### 마. 할인율과 국비지원율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권면금액 대비 일정 비율을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구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할인형)는 10만원권 상품권 구매 시 10만원보다 저렴하게 판매(10% 할인 시 9만원)하는 구조이고, 후자(추가형)는 10만원권 상품권 구매 시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10% 인센티브 지급 시 1만원 상품권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두 방식 모두 '할인'으로 표현하였다.

상품권 할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설정하도록 규정[15]되어 있어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행정안전부가 국비 지원시 발행액의

1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지역사랑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최소 5%를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비 지원[16] 수준에 따라 할인율이 결정되고 있다. 다만, 명절이나 지역축제기간 등에는 기준할인율을 초과하여 할인하기도 한다.

중앙정부는 상품권 발행 시 할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여부, 인구위기지역 여부 등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17]하고 있으며, 연도별로도 배분기준 및 지원비율에 차이가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국비지원을 시작한 2018년에는 고용위기지역에 지원함에 따라 10% 할인율에 대하여 국비를 10% 수준으로 지원하였으나, 이후 상품권 발행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를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와 불교부단체[18] 등으로 구분하고 국비지원 비율을 차등하였다. 주로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일반자치단체)는 국비지원율 5%와 지방비 분담 비율 5%를 합하여 할인율 10%로 상품권을 발행하였고,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국비지원이 없거나 2% 수준으로, 할인율은 5% 또는 7% 수준에서 정해졌다.

2023년부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별도로 구분하고 국비지원율을 타 지역보다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 2025년 1차 추경까지는 국비지원율 5%와 지방비 매칭 5%를 합하여 할인율이 10% 수준이었으나, 2025년 2차 추경에서는 국비지원율을 10%로 상향하여 할인율을 15%로 정하였고, 2026년 예산안에서는 국비지원율 7%, 할인율 12%를 계획하고 있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정부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구분하여 국비지원비율을 차등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국비지원율에 지방비 분담 비율(최소 5%)을 추가하여 정해지고 있다.

---

16) 국비 지원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지원” 사업을 통해 할인금액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과 2020년에 한하여 특별교부세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에 활용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할 5. 연도별 국비지원 예산 현황 참고

17) 국비 지원 시 지역별로는 특·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기준, 도는 기초자치단체(시·군)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18) 서울시 전체,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화성시 3개 지역이다.

[연도별 할인율, 국비지원비율]

| 연도 | 자치단체 구분 | | 할인율 (A+B) | 국비지원 비율 (A) | 지방비 최소분담율 (B) |
|---|---|---|---|---|---|
| 2018년 | 고용위기지역 시·군 | | 10% | 10% | - |
| 2019년 | 발행 지자체 | | 5~10% | 4% | 5% |
| 2020년 | 일반지자체 | | 5~10% | 4% | 5% |
| | 코로나 피해 지원 | | | 8% | 5% |
| 2021년 | 지역경제 회복 조기 지원 | | 10% | 8% | 5% |
| | 지역소비 진작 추가 지원 | | 10% | 6% | 5% |
|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 | 10% | 3%, 4% | 5% |
| 2022년 | 일반자치단체 | | 10% | 4% | 5% |
|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 | 10% | 2% | 5% |
| 2023년 | 일반지자체 | | 7~10% | 2% | 5% |
|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 | 자율 | 미지원 | 자율 |
| | 인구감소지역 | | 10% | 5% | 5% |
| 2024년 | 일반지자체 | | 7~10% | 2% | 5% |
|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 | 자율 | 미지원 | 자율 |
| | 인구감소지역 | | 10% | 5% | 5% |
| 2025년 (1차추경) | 일반지자체 | | 7% | 2% | 5% |
|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 | 자율 | 미지원 | 자율 |
| | 인구감소지역 | | 10% | 5% | 5% |
| 2025년 (2차추경) | 일반지자체 | 수도권 | 10% | 5% | 5% |
| | | 비수도권 | 13% | 8% | 5% |
|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 | 7% | 2% | 5% |
| | 인구감소지역 | | 15% | 10% | 5% |
| 2026년안 | 일반지자체 | 수도권 | 8% | 3% | 5% |
| | | 비수도권 | 10% | 5% | 5% |
|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 | 자율 | 미지원 | 자율 |
| | 인구감소지역 | | 12% | 7% | 5% |

주 1. 할인율은 운영지침 등에서 명시한 할인율
2. 2018년 고용위기지역은 군산, 거제, 고성(경남), 영암 등 4개 시군
3.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역 고시(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89개 지역

자료: 행정안전부

2024년을 기준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자치단체별로 할인율을 살펴보면, 기본 5~1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명절이나 특정기간에는 1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한 경우도 있었으며, 충북 영동과 옥천의 경우 2024년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일정기간동안 20% 할인율을 적용하였다.[19] 각 자치단체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평균할인율(재정투입비율)은 7.2%이다.

[2024년 발행액, 국비 및 지방비 투입액, 재정투입비율]

(단위: 백만원, %)

| 발행액<br>(A) | 국비<br>(B) | 지방비<br>(C) | 소계<br>(D= B+C) | 재정투입비율<br>(E= D/A) |
|---|---|---|---|---|
| 18,205,868 | 280,785 | 1,023,585 | 1,304,354 | 7.2 |

주 1. 2024년 기준
2. 자치단체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합산하였으며, 정책발행액 포함 여부 등 자치단체별 작성 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각 자치단체 제출자료

19)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통하여 10%를 초과한 할인율 적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다만, 범국가적 소비진작 지원, 명절, 지역 축제기간 등에는 예외적으로 10%를 초과하는 할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5 국비지원 사업 연도별 예산 현황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지원은 앞서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다만 2019년과 2020년에는 특별교부세도 활용되었다. 국비 지원은 상품권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에만 운영비 명목으로 1,050억원이 지원되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및 재원]

| 연도 | 발행지원 규모 | 국비 지원예산 | |
|---|---|---|---|
| 2018 | 1,000억원 | 100억원 | 추경 60억원<br>예비비 40억원 |
| 2019 | 2.3조원 | 884억원 | 예비비 533억원<br>특교 351억원 |
| 2020 | 9.6조원 | 약 6,690억원 | 본예산 712억원<br>특교 401억원<br>추경 5,577억원 |
| 2021 | 19.9조원 | 1조 2,522억원 | 본예산 1조 522억원<br>추경 2,000억원 |
| 2022 | 18.4조원 | 8,050억원<br>(발행비용 1,050억원 포함) | 본예산 6,050억원<br>전용예산 1,000억원<br>추경 1,000억원 |
| 2023 | 11.0조원 | 3,522억원 | 본예산 3,522억원 |
| 2024 | 8.6조원 | 2,998억원 | 본예산 2,998억원 |
| 2025 | 22.0조원 | 9,996억원 | 추경 9,996억원 |
| 2026안 | 24.0조원 | 1조 1,494억원 | 예산안 1조 1,494억원 |

주: 국비 지원예산에 행정안전부 직접 사업비는 제외됨
자료: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행정안전부 사업운영비 제외) 연혁을 살펴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은 2018년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상품권 할인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2018년 추가경정예산에서 60억원, 예비비로 40억원이 배정되어 총 100억원이 편성되었고, 군산, 거제, 고성, 영암 등 고용위기지역에 지원되었다.

2019년에는 본예산의 편성 없이 예비비 533억원을 배정하여 상품권 발행을 지원하였고, 특별교부세 350억 7,200만원도 활용되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은 정부안에 편성되어 본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코로나19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예산이 추가 편성되면서 2020년에는 6,690억원, 2021년 1조 2,522억원, 2022년 8,050억원이 지원되었다.

2023년부터 정부는 국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편성되면서 2023년 3,522억원, 2024년 2,998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리고 2025년에는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9,99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현재 집행되고 있다. 그리고 2025년 8월 국비지원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1조 1,494억원의 국비 지원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 Ⅲ 운영수수료 현황

## 1 상품권 유형별 수수료 현황

### 가. 상품권 발행 및 관리를 위한 운영비 발생 구조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회수 등의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상품권 유형별로 운영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에도 차이가 있다.

우선 지류상품권은 상품권 제작 비용, 판매 및 환전에 따른 비용,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비용이 발생한다. 상품권 제작은 주로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비용은 제작 물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00원/장 내외로 조사되었다. 상품권 판매 및 환전 비용 또한 지자체와 은행 간 협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로 판매 및 환전 수수료율은 각각 판매(환전)액의 0.25~1.5% 수준 (합산 시 0.5~2%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비용은 지류상품권 판매 및 환전 시 자금 현황 등을 관리 및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국조폐공사에서 제공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또는 카드형상품권 운영대행사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기도 한다. 한국조폐공사에서 제공하는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비용은 지류상품권 판매 및 환전대행사 지점 수에 따라 산정(월 40,700원×12개월×지점수)된다.

모바일상품권은 상품권의 발행, 결제 등을 위한 플랫폼 운영비가 발생하며, 주로 발행액의 0~1.1%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카드형상품권은 실물 카드 발급이 필요하며 모바일형과 마찬가지로 상품권의 발행, 결제 등을 위한 플랫폼 운영비가 발생한다. 카드형의 경우 발행액의 0~1.1% 내외 수준에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는 카드형상품권(경기도) 또는 모바일상품권(대구시)을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발행 및 운영 위탁업체가 이를 무상으로 대행해 주는 이유는 소비자가 상품권을 결제할 때마다 발생하는 결제수수료 수입으로 해당 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모바일과 카드형을 합쳐서 디지털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20] 상품권의 형태가 실물카드인지, 모바일 앱 내 충전금의 형태인지 차이인데, 상품권 운영에 있어서는 상품권의 발행, 결제 등 플랫폼 비용만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고, 결제 방식에 있어서도 상호 호환이 가능한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카드형상품권이라고 하더라도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고, 모바일상품권으로 발급받더라로 실물카드를 추가로 발급받거나, 카드를 등록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도 한다.

가맹점 수수료 부담에 있어서는 지류형의 경우 수수료 부담이 없으나, 카드형과 모바일형의 경우, 운영대행사의 운영방식 및 결제방식에 따라 부담 여부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QR결제는 가맹점 수수료가 없으나, 카드형상품권의 결제 및 페이를 통한 카드형 및 모바일형 상품권의 결제는 결제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품권 유형별 운영비 발생 비교]

| 유형 | 지류형 | 디지털형 | |
|---|---|---|---|
| | | 모바일형 | 카드형 |
| 상품권 형태 | 종이 | 핸드폰 앱 내 충전 | 실물카드<br>(선불 또는 직불카드) |
| 결제방식 | 현금과 유사 | · 핸드폰 앱 이용,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br>· 페이 등을 통한 결제 | · 실물카드 결제<br>· 페이 등을 통한 결제<br>· 발행·위탁업체에 따라 QR결제 가능 |
| 필요경비 (자치단체 부담) | · 상품권 제작 (장당 비용)<br>·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 (판매 및 환전액의 일정비율)<br>·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비용 (판매대행점 지점 수에 비례) | · 상품권 발행 및 결제, 자금이체 등을 위한 플랫폼 운영비(주로 발행액의 일정비율)<br>·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 |
| 주요대행 업체 | · 상품권 제작: 한국조폐공사<br>· 판매 및 환전: 지역 내 은행 등 금융기관 | 한국조폐공사, 코나아이, 비즈플레이,<br>나이스정보통신,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지역은행 등 | |
| 가맹점 부담 | 없음 | · QR결제 방식: 없음<br>· 카드 및 페이 결제: 체크카드 결제수수료 발생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 온누리상품권은 2025년 3월부터 카드형과 모바일형을 통합하여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비용 발생 구조를 바탕으로, 지류와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디지털형)의 운영비용을 단순화해서 비교해보면, 지류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제작 비용 100원/장, 지류상품권 판매 및 환전 비용은 0.5 ~ 2%, 모바일 및 카드형상품권(디지털형)의 발행·운영위탁 비용은 발행액의 0 ~ 1.1%로 가정할 경우, 상품권 10만원 발행(1만원권 10장) 시 지류는 1,500 ~ 3,000원의 비용이, 디지털형은 0 ~ 1,1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수수료 비용이며,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의 경우 위탁업체의 운영방식과 결제방법에 따라 가맹점에서는 카드결제수수료가 발생한다.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결제수수료율(2025년 기준) 0 ~ 1.15% 를 감안하면, 10만원 상품권 발행 시 150~1,250원의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 및 카드형상품권의 경우 총비용은 150 ~ 2,250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10만원 규모의 상품권 발행 시 운영 비용 (예시)]

| 유형 | 지류형 | 디지털형<br>(모바일 및 카드형) |
|---|---|---|
| 주요<br>가정 | - 1만원권 10장<br>- 상품권 제작 100원/장<br>- 판매+환전 수수료<br>: 발행액의 0.5 ~ 2% | - 발행 및 운영 위탁 수수료: 발행액의 0 ~ 1.1%<br>- 카드결제수수료: 0.15 ~ 1.15%<br>- QR결제 시 수수료: 없음 |
| 자치단체 부담(A) | 1,500 ~ 3,000원 | 0 ~ 1,100원 |
| 가맹점 부담(B) | 0 | 결제 수수료 150 ~ 1,150원 |
| 총비용(A+B) | 1,500 ~ 3,000원 | 150 ~ 2,250원 |

주: 1. 지류형의 경우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비용(연 500~1,000만원 수준)이 발생하나 계산에서 제외함
2. 지류형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 모바일 및 카드형의 판매·운영 위탁비용은 자치단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저 수수료율과 최고 수수료율의 범위로 정함
3.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2025년 기준
(연매출 3억미만(0.15%), 3~5억(0.75%) 5~10억(0.9%), 10~30억(1.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체크카드 결제수수료율]

| 구분 | 연매출<br>3억 이하 | 연매출<br>3~5억 | 연매출<br>5~10억 | 연매출<br>10~30억 | 연매출<br>30억 초과 |
|---|---|---|---|---|---|
| 2025 | 0.15% | 0.75% | 0.9% | 1.15% | 1.7% |
| 2024 | 0.25% | 0.85% | 1.0% | 1.25% | 1.7% |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8.14.), 2025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5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따른 비용과 비교해보면,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2025년 기준 지류상품권 판매 및 회수(환전) 수수료율은 2.0%, 디지털상품권 운영 수수료율은 발행액의 0.53%[21]로 조사되었다.

[온누리상품권 유형별 발행 및 운영수수료]

| 구분 | 지류형 | 디지털형<br>(모바일 및 카드형) |
|---|---|---|
| 운영<br>수수료 | · 발행 비용(조폐공사): 1매/78원<br>· 판매 수수료(금융기관) 판매액 x 0.7%<br>· 회수 수수료(금융기관) 환전액 x 1.3% | · 판매액 x 0.53% (2025.3월 이후)<br>* 2023~2024년: 모바일 1.35%,<br>카드 0.42% |
| 산출근거 | 계약(조폐공사) 및 협약(금융기관) | 조달 공고(0.715%) 의<br>투찰률(74%)을 적용하여<br>투찰수수료율(0.53%) 산정 |

주: 1. 2025년 기준
2. 2025년 3월부터 카드와 모바일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통합 운영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상품권 유형별로 운영수수료의 비용 부담 주체와 수입 귀속 주체를 정리해보면, 지류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업무를 위탁받은 지역 내 은행과 상품권 제작 업체인 한국조폐공사에 수입으로 귀속된다.

21) 2025년 3월부터 모바일과 카드형이 통합되었는데, 통합 전 수수료는 카드 0.42%, 모바일 1%이다.

모바일과 카드형상품권의 경우 비용부담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나 결제 방식에 따라 가맹점에게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수입은 코나아이, 한국조폐공사 등 상품권 발행 및 결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대행사와 카드에게 귀속된다.

앞서 보았듯이 부정 유통 방지[22]를 위해 지류상품권 발행이 감소하고, 디지털형(모바일 또는 카드형)상품권 발행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수수료 측면에서 보면 비용 부담이 자치단체에서 가맹점에게로 전환되고, 수입은 지역 내 판매 및 환전대리점에서 플랫폼 운영사와 카드사에게로 전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유형별 비용부담 주체 및 수수료 수입 귀속]

| 구분 | 지류형 | 디지털형<br>(모바일 및 카드형) |
|---|---|---|
| 비용 부담 | 자치단체 | 자치단체 (+ 가맹점*)<br>* 결제 방식에 따라 카드결제수수료 발생 |
| 수입 귀속 | - 지역 내 은행(상품권 판매 및 환전대행)<br>- 조폐공사(상품권 제작) | - 운영대행사(조폐공사, 코나아이, 나이스 등)<br>- 카드사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2) 부정유통 단속현황을 보면, 지류상품권의 부정유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유형별 부정유통 단속 현황]

(단위: 건)

| 연도 | 지류형 | 모바일형 | 카드형 | 합계 |
|---|---|---|---|---|
| 2021 | 95 | 72 | 35 | 202 |
| 2022 | 120 | 24 | 40 | 184 |
| 2023 | 117 | 41 | 36 | 194 |
| 2024 | 178 | 54 | 39 | 271 |
| 2025.상 | 76 | 15 | 20 | 111 |

자료: 행정안전부

## 나. 운영비 수수료 지급 현황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수수료 총액은 2024년 기준, 연간 845억원으로, 지류상품권 331억원, 모바일 335억원, 카드 105억원, 가맹점 결제수수료 지원에 28억원, 기타 46억원의 재정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23]

[운영수수료 총액(상품권제작, 판매대행, 운영위탁 등)]

(단위: 백만원)

| 구분 | 지류형 | 모바일형 | 카드형 | 가맹점 지원 | 기타 | 소계 |
|---|---|---|---|---|---|---|
| 내용 | 상품권 제작 판매 및 환전 대행 | 운영위탁 | 운영위탁 | 결제수수료 지원 | 홍보비, 인건비 등 | |
| 금액 | 33,103 | 33,509 | 10,464 | 2,816 | 4,597 | 84,489 |

주: 2024년 기준
자료: 각 자치단체 제출자료

상품권 발행액 10만원당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비용을 계산해보면, 평균적으로 464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유형별로 보면 지류상품권이 2,346원, 모바일상품권 728원, 카드형상품권은 86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출되며, 따라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운영수수료는 지류형이 가장 비싸고, 다음으로 모바일, 카드 순이다.

23) 카드형과 모바일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처음 상품권 발행 유형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즉, 모바일에서 상품권을 발급받아 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형으로, 카드형상품권 발급 후 모바일앱을 통해 QR 결제를 하는 경우 카드형으로 분류하였다.

[상품권 유형별 발행액 10만원당 운영수수료]

(단위: 억원, 백만원, 원)

| | 지류형 | 모바일형 | 카드형 | 가맹점수수료 지원 | 기타 | 소계 |
|---|---|---|---|---|---|---|
| 발행액(A) | 14,109 | 46,031 | 121,919 | - | - | 182,059 |
| 운영비(B) | 33,103 | 33,509 | 10,464 | 2,816 | 4,597 | 84,489 |
| 발행액 10만원당 운영 수수료(B/A) | 2,346 | 728 | 86 | - | - | 464 |

주: 1. 2024년 기준
2. 자치단체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합산하였으며, 정책발행액 포함 여부 등 자치단체별 작성 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각 자치단체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모바일과 카드형상품권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이때 운영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모바일 또는 카드형상품권으로 분류한 경우도 있어서 두 유형의 상품권 운영수수료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카드형상품권의 경우 운영 수수료가 0원인 경우가 많아서 전국적으로 볼 때 카드형 상품권의 운영수수료가 모바일상품권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파악된다.[24)25)]

24) 발행규모가 큰 경기도가 판매·위탁업체와 운영대행비를 0원으로 협약하였는데, 2024년 경기도 시·군의 상품권 발행액은 3.3조원이다.

25) 운영대행사는 카드결제수수료 수입을 통해 수익을 보전하고 있다. (카드결제수수료(2025년 기준): 가맹점의 연매출에 따라 0.15~1.15%)

## 2 자치단체별 수수료율 비교

같은 유형의 상품권을 발행하더라도 지자체별로 상품권 발행 수수료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6] 이하에서는 상품권 유형별로 지자체별 수수료 차이를 검토하였다.

### 가. 지류상품권

지류상품권에는 상품권제작, 상품권 판매 및 환전대행사 수수료, 지류상품권 판매 및 환전 등 관리시스템 운영수수료가 발생한다.

① 우선 지류상품권 제작은 모두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하며, 제작비용은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기 보다는 발행부수에 따라 단가가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10만장 미만은 장당 130원, 10만장 이상은 장당 120원, 30만장 이상은 장당 115원이다.

② 상품권 판매 및 환전대행사 수수료는 지역 내 은행 등에 위탁하는데, 대부분 상품권 판매액과 환전액(회수액)의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수수료율은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다. 상당수의 지자체가 판매액의 0.5%와 환전액의 0.5%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낮은 수수료로 협약한 자치단체는 경북 성주군으로 판매 0.25%, 환전 0.25%로 협약하였다. 가장 높은 수수료율로 협약한 자치단체는 강원도 정선으로 판매 0.5%, 환전 1.5%이며, 경북 청도 등은 연간 총액으로 협약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6) 다만, 상품권 발행규모나 협약 조건에 따라 수수료율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수수료율의 높고 낮음을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류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 기준]

| 수수료율 | 예시 |
|---|---|
| 판매 0.25%, 환전 0.25% | 경북 성주 |
| 판매 0.5%, 환전 0.4% | 전북 군산 |
| 판매 0.5%, 환전 0.5% | 인천 동구, 강원 삼척/홍천/평창 등 다수 |
| 판매 0.8%, 환전 1% | 충북 괴산, 경북 김천 |
| 판매 1.0%, 환전 0.8% | 경남 의령 |
| 판매 0.5%, 환전 1.5% | 강원 정선 |
| 연간총액으로 협약 | 경북 청도 |

주: 2024년 기준
자료: 각 자치단체 제출자료

③ 지류의 판매 및 환전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자금관리시스템)을 조폐공사에서 제공하는데, 조폐공사는 월 개소당 40,700원의 비용을 청구(2024년 기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 내 20개 판매 및 환전대행사에서 지류상품권을 판매할 경우 연간 976만 8천원의 시스템 이용료가 발생한다.

### 나. 모바일상품권

모바일상품권의 수수료율은 최소 0%에서 최대 1.1%로 조사되었다.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지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대구광역시인데, 별도의 운영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모바일상품권 운영 대행 수수료 현황]

| 수수료율 | 예시 |
|---|---|
| 0% | 대구광역시 |
| 5천억원 이하 발행: 0.665%<br>5천억~1조원 이하 발행: 0.595%<br>1조원 초과 발행: 0.525%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
| 0.3% | 경기 김포 |
| 0.77% | 강원도, 전남 영암, 경북 고령,<br>경남 창원 / 진주 / 거제 / 거창 등 |
| 1.1% | 충북 단양, 강원 평창, 충남 계룡 등 |

주 1. 2024년 기준
2. 서울시는 발행규모에 따라 수수료율 차등 적용
자료: 각 자치단체 제출자료

### 다. 카드형상품권

카드형상품권도 모바일상품권과 유사하게 수수료율은 최소 0%에서 최대 1.1%로 조사되었다. 특징적인 경우는 경기도로,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상품권을 발행하지만 경기도청에서 일괄(성남, 시흥, 김포 제외)로 판매·운영 위탁업체를 선정하였고, 별도의 운영수수료 지급 없이 발행 및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협약하였다. 경기도와 협약한 판매·운영 위탁업체는 가맹점에서 부담하는 카드결제수수료로 수익을 대체하고 있다.

[카드형 상품권 운영대행 수수료 현황]

| 수수료율 | 예시 |
|---|---|
| 0% | 경기도 31개 자치구 중 28개(성남, 시흥, 김포 제외)<br>대구시 |
| 0.3% | 경북 울진 |
| 0.5% | 경북 봉화 |
| 1.1% | 경북 상주, 경남 남해 등 |

주 1. 2024년 기준
2. 경기도 성남, 시흥, 김포의 경우 카드형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음(지류 또는 모바일 발행)
자료: 각 자치단체 제출자료

모바일과 카드형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수수료율은 지역간의 차이 보다는 운영대행사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운영대행사마다 수수료율이 다른 이유는 상품권 운영 방식, 결제 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운영대행사가 가맹점으로부터 결제수수료 수취가 가능한 경우 지자체가 부담하는 위탁수수료율은 낮거나 없는 수준에서 협약되고 있고, 결제수수료 수취가 어려운 경우 위탁수수료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고 있다.

## 3 주요 운영대행사 수수료 현황

앞서 운영대행사 현황에서 보았듯이 각 자치단체가 운영대행사로 위탁하고 있는 업체는 주로 한국조폐공사와 비즈플레이,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코나아이, 나이스 등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카드 및 모바일상품권 운영대행사를 중심으로 수수료 현황을 비교하였다.

참고로 지류상품권의 운영대행사는 자금관리시스템을 대여해주는 업체로, 자금관리시스템이란 지류상품권 판매나 환전 시 해당 비용을 정산(자치단체 금고에 입금 및 출금)해주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협약에 따라 별도로 비용을 받기도 하지만, 모바일상품권이나 카드형상품권을 판매·운영 위탁 시 해당 수수료로 대체해주기도 한다.

### 가. 운영대행사 A

A업체는 지류상품권 운영을 위해 자금관리시스템을 대여해주고 있는데, 시스템에 접근이 필요한 창구 수, 판매대행점 개소수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개소당 월 40,700원의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모바일형과 카드형의 수수료율 산정은 동일하며, 판매액의 0.6%~1.1%의 범위에서 수수료율을 청구하고 있다. 상품권 판매액 규모가 큰 전북 군산은 0.6%로 협약하였고, 경기 성남, 충남 아산시는 0.7%이나, 발행규모가 적은 충북 단양, 전남 여수, 전남 함평 등은 1.1%로 협약하였다.

A업체는 QR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QR결제 시 자치단체 상품권 운영 계좌에서 가맹점주의 계좌로 자금을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가맹점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A 업체의 수수료율(예시)]

(단위: 백만원)

| 지역 | 발행액 | 수수료 지급액 | 수수료율 |
|---|---|---|---|
| 전북 군산 | 278,500 | 1,680 | 0.6% |
| 경기 성남 | 179,494 | 1,371 | 0.7% |
| 충남 아산 | 244,961 | 1,467 | 0.7% |
| 충북 단양 | 19,050 | 200 | 1.1% |
| 전남 여수 | 56,731 | 635 | 1.1% |
| 전남 함평 | 3,794 | 42 | 1.1% |

자료: 각 자치단체 제출자료

### 나. 운영대행사 B

B업체는 주로 카드형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탁받고 있으나, 모바일상품권 발행을 위탁대행하기도 한다.

울산광역시와 경기도 김포시 등으로부터 모바일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수수료율은 각각 0.25%, 0.3%로 협약하였다.

카드형상품권의 경우 경기도와 협약하여 경기도 내 28개 기초자치단체(성남시, 김포시, 시흥시 제외)의 발행 및 운영을 대행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다. B업체는 카드형상품권의 경우 카드사와 협약하여 상품권 결제 및 환전 등을 대행하는데,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결제수수료를 카드사와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B 업체의 수수료율(예시)]

(단위: 백만원)

| 상품권 유형 | 지역 | 발행액 | 수수료 지급액 | 수수료율 |
|---|---|---|---|---|
| 모바일 | 울산광역시 | 258,251 | 424 | 0.25% |
| 모바일 | 경기 김포 | 129,063 | 356 | 0.3% |
| 카드 | 경기 28개 기초자치단체 | 3,315,559 | 없음 | 0% |
| 카드 | 경북 김천 | 89,264 | 없음 | 0% |
| 카드 | 강원 삼척 | 64,332 | 100 | 정액 |
| 카드 | 충북 옥천 | 80,785 | 120 | 정액 |

주: 발행액은 해당 유형 상품권 발행액임
자료: 각 자치단체 제출자료

### 다. 운영대행사 C

C 업체는 모바일상품권을 주로 위탁받아 운영하며, 상품권 발행규모와 상관없이 발행액의 0.77%의 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있다. C업체가 운영하는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가맹점의 결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 라. 운영대행사 D

D 업체는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모바일상품권의 발행 및 QR 결제로 협약하였다. 수수료율은 상품권 발행규모에 따라 다르게 산정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규모 5천억원 이하는 발행액의 0.665%, 발행규모 5천억원에서 1조원 이하는 0.595%, 발행규모 1조원 초과는 0.525%이다.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QR결제만 가능하며, 가맹점의 결제수수료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 마. 지역은행(E은행, F은행, G은행, H은행)

지역은행과 협약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들도 있다.

E은행은 카드형과 모바일형을 모두 운영하고 있으며, E은행과 위탁운영을 체결한 지역은 대구광역시와 경북 포항시이다. 대구광역시의 상품권 발행 수수료율은 0%이고, 포항시는 0.09%로 협약하였다.[27)]

F은행은 전북 전주시의 발행 및 운영 위탁업체이며, 수수료율은 0.1896%이다. G은행은 부산시의 상품권 발행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수료율은 0.06%이다. H은행은 광주광역시와 협약하였고 수수료율은 0%이다.

지역은행들은 해당 지역과 주로 협약하고 있는데,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낮은 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은행들은 결제 시 발생되는 카드결제수수료(주로 BC카드) 수입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

27) 2024년 발행액: 대구 282,771백만원, 포항 210,078백만원

# Ⅳ 주요 개선과제

## 1 상품권 발행 관련

### 가. 지역 특성에 따른 지방비 최소분담율 차등 설정 및 할인율 결정의 자율성 확대 필요

**행정안전부는 국비 지원 시 지방비 분담 비율을 모든 지역에 최소 5%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지방비 부담 여력의 차이가 있으므로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지방비 최소분담율을 차등화하고, 자치단체가 상품권 운용 방향,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상품권 할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①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②일반자치단체 중 수도권, ③일반자치단체 중 비수도권, ④인구감소지역으로 구분하여 국비 지원율을 차등하고 있다. 2026년 예산안에 따른 국비지원율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미지원,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이다.

상품권 할인율은 국비 지원율과 지방비 분담율의 합으로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 국비지원율이 7%인 경우, 지방비 분담율 최소 5%를 합하여 상품권 할인율은 12%+$\alpha$가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지방비 최소 분담 비율인 5%를 적용하고 있으며, 다만 명절이나 지역 행사 등 특정 시기에 지방비 분담율을 높여 할인율을 상향하고 있다.

국비 지원율은 연도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지방비 분담율은 연도 및 지역에 상관없이 상품권 발행액의 최소 5%를 고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즉, 국비지원율이 감소하면 할인율이 감소하는 구조로, 지방비 분담율은 매년 동일하게 적용하여 왔다.[28)]

28) 국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는 일부 복지사업들이 대상자가 받는 혜택은 동일하되, 지역별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하여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을 차등하여 운영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29]

[할인율, 국비 지원 비율, 지방비 분담 비율]

| 연도 | 자치단체 구분 | | 할인율 (A+B) | 국비지원 비율 (A) | 지방비 최소분담율 (B) |
|---|---|---|---|---|---|
| 2023년 ~2025년 (1차추경) | 일반자치단체 | | 7~10% | 2% | 5% |
|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 | 자율 | 미지원 | 자율 |
| | 인구감소지역 | | 10% | 5% | 5% |
| 2025년 (2차추경) | 일반자치단체 | 수도권 | 10% | 5% | 5% |
| | | 비수도권 | 13% | 8% | 5% |
|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 | 7% | 2% | 5% |
| | 인구감소지역 | | 15% | 10% | 5% |
| 2026년안 | 일반자치단체 | 수도권 | 8% | 3% | 5% |
| | | 비수도권 | 10% | 5% | 5% |
|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 | 자율 | 미지원 | 자율 |
| | 인구감소지역 | | 12% | 7% | 5% |

주 1. 할인율은 운영지침 등에서 명시한 할인율
2.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화성시
3.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역 고시(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89개 지역
자료: 행정안전부

이러한 매칭 방식은 지역에 따라 상품권 주요 소비자인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차등하는 방식으로, 자치단체는 재정여력에 상관없이 모든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최소 발행액의 5%를 분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역에 관계 없이 지방비 매칭 비율이 고정된 방식은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재정력이 낮은 자치단체는 상품권 발행액을 확대하는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29) 보조사업의 경우 주로 서울과 서울 외로 구분하여 국고보조율을 차등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등에 일부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다.

재정자립도[30]와 인구당 발행액을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일정한 추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인구당 발행액이 높은 자치단체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재정자립도와 인구당 발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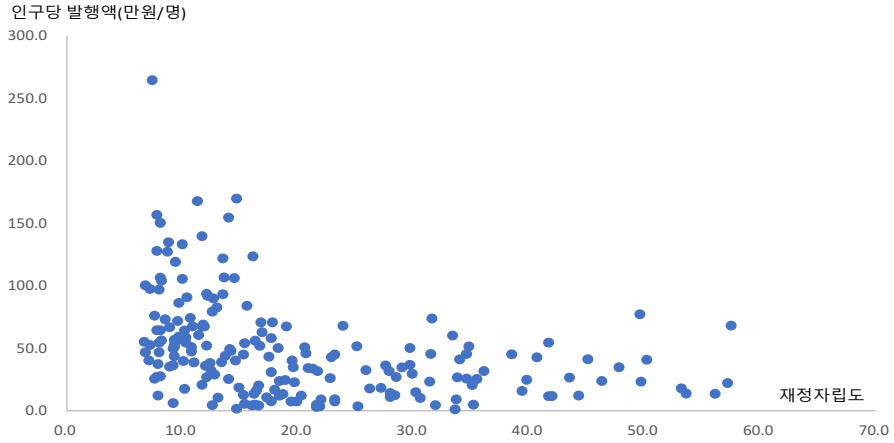


주: 2024년 기준
자료: 각 자치단체 제출자료(발행액) 및 통계청 자료(주민등록인구, 재정자립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목적이 지역경제 외부로의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라는 점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내 경제 활성화에 정책의 무게를 더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사랑상품권은 수도권이나 대도시보다는 재정력이 낮은 자치단체에서 상품권 발행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비 매칭 비율을 재정력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은 재정여력이 좋지 않은 자치단체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인구당 발행액이 높은 상위 20개 자치단체를 나열해보면, 재정자립도가 시·군·구별 통합재정자립도[31] 대비 모두 낮은 지역들이다.

---

30)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가늠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산식)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 자체단체 예산규모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등

31) 2024년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통합재정자립도는 시 32.7, 군 14.3, 자치구 24.5임

[2024년 인구당 발행액 상위 20개 자치단체]

| 광역 | 기초 | 재정자립도(%) | 인구당 발행액(만원/명) |
|---|---|---|---|
| 경북 | 청송군 | 7.4 | 264.4 |
| 전북 | 익산시 | 14.7 | 169.6 |
| 충북 | 옥천군 | 11.3 | 167.6 |
| 전남 | 해남군 | 7.8 | 156.6 |
| 강원 | 태백시 | 14.0 | 154.5 |
| 전북 | 무주군 | 8.1 | 150.2 |
| 경북 | 울진군 | 11.7 | 139.6 |
| 강원 | 인제군 | 8.8 | 134.7 |
| 충남 | 부여군 | 10.0 | 133.1 |
| 전남 | 강진군 | 7.8 | 127.8 |
| 전북 | 남원시 | 8.7 | 127.1 |
| 전북 | 군산시 | 16.1 | 123.4 |
| 강원 | 영월군 | 13.5 | 121.7 |
| 전북 | 고창군 | 9.4 | 119.0 |
| 강원 | 삼척시 | 13.6 | 106.6 |
| 전북 | 순창군 | 8.1 | 106.4 |
| 충북 | 제천시 | 14.5 | 106.0 |
| 전북 | 김제시 | 10.0 | 105.4 |
| 경북 | 상주시 | 8.2 | 104.0 |
| 경북 | 봉화군 | 6.8 | 100.2 |

주: 1. 2024년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통합재정자립도는 시 32.7, 군 14.3, 자치구 24.5임
2. 인구수는 연도말 주민등록인구 기준
3. 특·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기준, 도는 기초자치단체(시·군) 기준으로 정리하여 정렬함

자료: 각 자치단체 제출자료 및 국가통계포탈(KOSIS)

실제 지방비 대응 여력에 따라 지자체들은 계획한 만큼 상품권을 발행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국비지원을 적게 받은 사례도 있다. 국고보조금통합포털(e나라도움)에 기재된 2025년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고보조금 규모를 확인해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발행수요와 재정여건, 그리고 지역별 국고보조율 기준을 감안하여 계상한 금액과 실제 자치단체가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에 차이가 있다. 이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역이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사업을 설계했음에도 실제로는 지방비 대응여력에 따라 이들 지역이 계획한 만큼 발행을 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국비지원도 행정안전부의 계상 대비 적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32)]

32)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분석(행정안전위원회)」, 2025.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지역별 국비배분계획액 대비 실교부액 비교]

(단위: 백만원)

| 유형[1] | 국비지원액 | | 국비지원 계획·실제 차이(A-B) |
|---|---|---|---|
| | 당초계획(A) | 교부액(B) | |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2] | 10,877 | 17,123 | 6,246 |
| 수도권·비수도권 일반지역 | 661,255 | 713,568 | 52,313 |
| 인구감소지역 | 297,933 | 239,375 | △58,558 |

주: 1)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안의 지역구분이 상이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유형을 불교부단체(2차 추경만 해당), 일반, 인구감소지역으로만 분류하여 계상함
2) 2025년 2차 추경에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도 국비를 지원(2%)함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및 국고보조금통합포털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상품권의 할인율을 높여서 수요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상품권 할인의 혜택을 누리고, 아울러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지방비 분담율과 발행규모는 상충관계라는 점에서 정부는 지방비 최소분담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차등화하고 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인율을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6년 예산부터 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의무화되어 앞으로 국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재정여력과 요구사항, 상품권 발행의 효과성 등을 점검하여 지방비 분담 비율 등을 보다 면밀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

### 나. 유효기간 만료된 상품권에 대한 처리방법의 일관성 확보 및 유효기간 만료 전 상품권 소진을 위한 사용 촉진 방안 마련 필요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의 처리에 대해 만료 후 세입처리, 유효기간 연장, 자동 환불 등 지자체별로 처리방법이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전국적으로 발행되고 있으므로 보다 표준화된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 등을 일관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만료 전에 상품권이 소진될 수 있도록 사용 촉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33]에 근거한다. 다만, 동 법률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0년 이전부터 상품권을 발행한 자치단체의 경우 유효기간이 종료된 상품권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방법은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의 경우는 2020년 상품권 발행이 시작되어 2025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이 발생하는데, 서울시에 따르면 상품권 소멸시점(상품권 생성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만료처리하며, 미사용잔액에 대해서는 잔액 환불이 불가하고, 소멸시효가 도래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입처리할 계획이다.[34] 대구시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미사용 상품권에 대해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고, 세종시는 충전액 잔액은 자동 환불하고, 캐시백은 소멸 및 세입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경기도 시흥시, 동두천시, 강원도 횡성군, 충남 서산시, 경북 상주시 등은 유효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33)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생략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34) 2025년 8월 시점기준 소멸액은 1억 7,680만원으로 서울시는 해당 금액을 2026년 세입예산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유효기간 만료된 상품권 처리 방법(예시)]

| 지역 | 유효기간 만료된 상품권 처리 방법 |
|---|---|
| 서울 | · 상품권 소멸시점(상품권 생성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만료처리<br>· 소멸시효 일자부터는 상품권 미사용 잔액 환불 불가<br>· 소멸시효가 도래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입처리 |
| 대구 | · 세입처리 |
| 세종 | · 충전액 잔액 자동 환불 처리, 캐시백은 소멸 및 세입처리 |
| 경기 시흥<br>경기 동두천<br>강원 횡성<br>충남 서산<br>경북 상주 등 | · 유효기간 연장 처리(매년 연장, 일정기간 연장) |

자료: 1. 자치단체 제출자료 등
2. 서울시 25년 소멸 예정 서울사랑상품권 이용 안내(2025.09.25.)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64264)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상품권 사용을 적극 권장해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타당하나, 구매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사유로 미사용 상품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마다 기준이 상이할 경우 이용에 불편이나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초기에는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였고,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역도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고, 국비지원이 의무화되어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자치단체 사무라는 점에서 자치단체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고, 다른 지역에 대한 정보도 쉽게 알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운영하기보다는 소비자(지역주민) 기준으로 차별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간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상품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사용 촉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다. 부정유통 관리 감독 강화 필요

**첫째, 국고 지원 확대에 따른 할인율 상향으로 부정유통에 대한 유인이 증가할 수 있으며 최근 3년간('22~'24년) 부정유통 단속 결과 적발사례가 증가하고 유형이 다양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면밀한 유통체계 구축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35]

2023년~2025년 상반기(1차 추경 기준)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5%의 할인율을 유지하면서 명절 기간 등 특정 기간에 할인율을 상향하거나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비로 지원하는 일반발행 규모만 총 24조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더해 정책발행과 각 자치단체에서 자체재원으로만 발행할 상품권까지 더하면 총 발행규모는 이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할인율이 8~12% 이상으로 상향될 예정이며, 올해에도 특별재난지역 등에 발행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15%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할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

「2026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을 감안하여 2025년도에 상향 조정한 1회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를 2026년도에도 동일하게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매·보유 한도 지침 및 할인율 변경 내역]

| 구분 | 기존 | 변경('25.6.~) |
|---|---|---|
| (회당) 구매한도 | • 70만원 | • 200만원 이내 지자체 자율 결정 |
| 보유한도 | • 150만원 | • 200만원 이내 지자체 자율 결정 |
| 할인율 | •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율 결정 가능<br>• 1회 추경 국비지원 발행분의 경우 일반지자체 7%, 인구감소지역 10%<br>• 2회 추경 국비지원 발행분은 7~15% 예정<br>※ 단, 지자체가 추가 지방비 부담을 통해 할인율 인상 가능<br>•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등 정해진 기간 동안 할인율 15~20% |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35)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5

그런데 이같이 발행규모가 확대되고 할인율이 상향된 상황에서 1인당 1회 구매한도가 높아지면 정책의도와 달리 일부에서는 부정유통의 유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2회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22~'24년)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형별로 보면 제한업종에서의 사용이나 결제거부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부정수취와 불법환전의 경우 2022년 대대적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로 2023년 크게 감소하였다가 2024년에는 다시 증가하였다.

한편 기타 유형은 매년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가맹점 등록 업종 외 상품 판매[36], 외상대금의 일괄 결제 등의 부정거래가 해당한다. 이전에는 단순히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깡' 행위가 주를 이룬 반면 지금은 다양한 형태로 부정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새로운 유형의 부정유통이 증가하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37]

[2022~2024년 부정유통 일제단속 결과 유형별 적발건수]

(단위: 건)

| 연도 | 부정수취<br>불법환전 | 제한업종 | 결제거부 | 기타 | 합계 |
|---|---|---|---|---|---|
| 2022 | 132 | 45 | - | 7 | 184 |
| 2023 | 48 | 14 | 48 | 84 | 194 |
| 2024 | 121 | 13 | 33 | 104 | 271 |

주: ① 부정수취·불법환전: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아 현금화하는 '깡' 행위, ② 제한업종: 상품권 사용이 금지된 업종에서 상품권을 받은 경우, ③ 결제거부: 가맹점이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과 차별대우한 경우, ④ 기타: 가맹점 등록 업종 외 상품 판매, 선결제 및 외상값 일괄 결제 등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36) 예를 들어 음식점으로 등록된 가맹점이 전자제품, 귀금속 등 본래 업종과 무관한 상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판매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37)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사용처)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므로 지역별 가맹점 기준은 상이하다. 단,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서는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플랫폼사업장 등을 포함한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한 경우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및 할인율 상향에 따라 부정거래 및 부정편익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21년부터 연 2회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온누리상품권 단속 실적과 비교하여 저조한 수준으로,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적극적으로 부정유통을 단속하고 처분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유사한 온누리상품권의 경우도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과 처분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2022년 121건, 2023년 85건, 2024년 143건을 부정유통으로 적발하였으며, 가맹점 취소, 과태료, 서면경고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온누리상품권 지역별 부정유통으로 확인(적발)된 가맹점 현황]

(단위: 건)

| 지역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9월 말) |
|---|---|---|---|---|---|---|
| 서울 | 8 | - | 12 | 29 | 27 | 35 |
| 부산 | - | - | 15 | 22 | 22 | 3 |
| 대구 | - | - | 14 | 17 | 1 | 15 |
| 인천 | - | - | 5 | - | 11 | 3 |
| 광주 | 3 | - | 18 | 2 | 8 | 4 |
| 대전 | 1 | - | 2 | 2 | 10 | 3 |
| 울산 | 3 | - | 4 | 1 | 1 | 1 |
| 세종 | - | - | - | - | 2 | - |
| 강원 | - | - | 2 | 1 | 3 | 1 |
| 충북 | - | - | 1 | - | 2 | - |
| 충남 | - | - | 1 | - | - | 2 |
| 전북 | - | - | 18 | - | 5 | 2 |
| 전남 | - | - | 5 | - | 8 | 1 |
| 경북 | - | - | 3 | 9 | 1 | 2 |
| 경남 | - | - | 6 | 2 | 12 | 5 |
| 제주 | - | - | 3 | - | - | - |
| 경기 | 2 | - | 12 | - | 30 | 3 |
| 합계 | 17 | - | 121 | 85 | 143 | 80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정조치 결과]

(단위: 건)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9월 말) |
|---|---|---|---|---|---|---|
| 가맹취소 | - | - | - | 1 | 63 | 61 |
| 과태료 | 7 | - | 107 | 17 | 23 | 4 |
| 과태료+가맹취소 | 9 | - | 7 | 1 | 31 | 13 |
| 서면경고 등 | 1 | - | 7 | 66 | 26 | 2 |
| 소계 | 17 | - | 121 | 85 | 143 | 80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결과를 비교해보면, 온누리상품권은 연 100~150건이 적발되고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200~250건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적발실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발행액 규모, 구매한도, 할인율 등을 비교할 때 지역사랑상품권의 상대적인 부정유통 적발 실적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액이 20조원 가량이고,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액은 연 4~5조원 수준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액이 5배 가량 더 많다. 1인당 구매한도는 비슷한 수준이나, 할인율이 지역사랑상품권이 더 크기 때문에 선호도가 더 높고, 따라서 부정거래 및 부정편익 유인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연간 적발실적이 200건 내외인데, 190개 자치단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별로 단순 계산하면, 자치단체별로 적발실적은 1건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규모 및 1인당 구매한도 등 비교]

| | 지역사랑상품권 | 온누리상품권 |
|---|---|---|
| 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
| 운영기관 | 지방자치단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운영대행 | 한국조폐공사, 코나아이 등 협약업체 | 한국조폐공사, 우리은행 |
| 단속주체 | 지방자치단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발행액<br>(판매액) | 2023: 20.1조원<br>2024: 17.6조원<br>2025: 22.0조원 이상<br>2026안: 24.0조원 이상 | 2023: 2.0조원<br>2024: 4.3조원<br>2025: 5.5조원<br>2026안: 5.5조원 |
| 할인율<br>(2025년) | 지역에 따라 7~15%<br>(특수기간 10~20%, 특별재난지역 20%) | 지류 5%, 디지털 10%(특수기간 15%) |
| 1인당 월<br>구매한도 | · 2024: 70만원<br>· 2025: 200만원(지류형은 70만원)<br>· 2026: 미정 | · 2024: (지류) 150만원, (디지털) 200만원<br>· 2025: (지류) 50만원, (디지털) 200만원<br>· 2026: (지류) 50만원, (디지털) 200만원 |

주: 1.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수도권 10%, 비수도권 13%,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7%, 인구감소지역 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온누리상품권은 2024년 143건의 적발에도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류상품권 월 할인 구매한도 축소 및 가맹점의 월 최대 환전 한도 조정, 과징금 도입 등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2024.12.)[38]하는 등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반면에 지역사랑상품권은 국비 지원 배분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단속 등에 행정안전부는 필요한 가이드라인만 제공할 뿐 모든 시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어 행정안전부의 총괄적 역할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자치단체에 따라 역량의 차이가 있고, 정보의 제약 등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 등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부정유통 단속 등도 행정안전부가 적극 개입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25년 8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38)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4.12.19.)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과 사용 활성화 방안을 담은 종합 개선방안 마련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 판매 · 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된 바 국비지원 의무화 뿐 아니라 행정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2 운영수수료 관련

### 가. 운영수수료에 대한 정보 공유 필요

**자치단체별로 판매 및 환전대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의 차이가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선택하여 협약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판매 및 환전대행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앞서 자치단체별 수수료 현황에서 보았듯이 지류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이라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자치단체별로 수수료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류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는 최소 0.5%에서 최대 2.0%로 2배 이상 차이가 있다.[39]

자치단체별로 판매 및 환전수수료율을 비교해보면, 수수료율이 상품권 발행규모와도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다'지역과 '라'지역은 발행규모가 각각 15억원과 234억원으로 10배 이상 차이 나지만 판매 및 환전 수수료율이 각각 0.5%로 같다. 그리고 '가'지역과 '차'지역은 지류상품권 발행규모가 각각 60억원과 43억원으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수수료율은 '가'지역은 판매 0.25%, 환전 0.25%이고, '차'지역은 판매 0.5%, 환전 1.5%로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각각 2,400만원과 8,500만원으로 '차'지역이 낮은 발행규모에도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39) 모바일형과 카드형 상품권의 경우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위탁수수료 뿐 아니라 가맹점이 부담하는 결제수수료를 포함하여 총비용으로 비교하여야 하므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운영수수료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류형의 경우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수수료가 전부이므로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지류상품권 운영수수료 비교(예시)]

(단위; 백만원)

| 지역 | 지류상품권 발행액 | 판매 및 환전 대행 비용 | |
|---|---|---|---|
| | | 수수료 지급액 | 수수료율 |
| 가 | 6,000 | 24 | 판매 0.25%, 환전 0.25% |
| 나 | 40,000 | 446 | 판매 0.5%, 환전 0.4% |
| 다 | 1,451 | 14 | 판매 0.5%, 환전 0.5% |
| 라 | 23,350 | 204 | |
| 마 | 7,916 | 86 | |
| 바 | 5,822 | 90 | 판매 0.8%, 환전 0.7% |
| 사 | 1,095 | 17 | |
| 아 | 9,834 | 171 | 판매 0.8%, 환전 1.0% |
| 자 | 3,868 | 84 | |
| 차 | 4,302 | 85 | 판매 0.5%, 환전 1.5% |

자료: 자치단체 제출자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품권 발행규모가 비슷한데도 업체별로 수수료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협약내용에 따라 서비스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는 위탁 사항이 지역별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정보가 부족한 지자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25년 8월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제15조의2[40])가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되었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이 의무화(제3조의2)[41]되었다.

---

40) (개정 전)
제1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후)
제1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6.〉

41) 제3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법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할 때 행정안전부는 상품권의 발행·유통에 대한 자치단체별 실태조사와 충분한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등이 비용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나. 가맹점의 카드결제수수료 부담에 대한 완화 방안 모색 필요

**지류상품권과 달리 모바일상품권과 카드형상품권의 경우 결제방식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결제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가맹점 수수료 지원, 결제수수료 부담이 없는 QR결제 홍보, 카드결제수수료율 인하 협상 등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지류상품권을 결제대금으로 받은 가맹점은 이를 판매(환전)대행점에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데, 이때 지류상품권 환전에 따른 수수료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지류상품권을 받은 가맹점에게는 별도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카드형상품권의 경우 결제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카드결제 또는 페이결제 등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면 카드결제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는 가맹점에서 부담하여야 한다.[42]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랑상품권의 재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유통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26.]

42) 모바일상품권은 운영대행사 운영방식에 따라 결제수수료 발생 여부가 달라진다.

[상품권 유형별 운영비 발생 비교]

| 유형 | 지류형 | 디지털형<br>(모바일 및 카드형) |
|---|---|---|
| 필요경비<br>(자치단체<br>부담) | · 상품권 제작(장당 비용)<br>·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br>(판매 및 환전액의 일정비율)<br>·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비용<br>(판매대행점 지점 수에 비례) | · 상품권 발행 및 결제, 자금이체 등을 위한 플랫폼 운영비 (주로 발행액의 일정비율)<br>·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
| 가맹점<br>부담 | 없음 | · QR결제 방식: 없음<br>· 카드 및 페이 결제: 체크카드 결제수수료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카드결제수수료는 주로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0.15~1.15%의 범위에서 결정된다. 이는 2025년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된 결과이며, 2024년에는 수수료율이 0.25~1.25%였다.[43]

[체크카드 결제수수료율]

| 구분 | 연매출<br>3억 이하 | 연매출<br>3~5억 | 연매출<br>5~10억 | 연매출<br>10~30억 | 연매출<br>30억 초과 |
|---|---|---|---|---|---|
| 2025년 | 0.15% | 0.75% | 0.9% | 1.15% | 1.7% |
| 2024년 | 0.25% | 0.85% | 1.0% | 1.25% | 1.7% |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8.14.), 2025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5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매출액에 따라 가맹점들이 부담하는 수수료 총액의 차이는 있지만, 2024년 카드형상품권 발행액 12조 153억원에 대한 카드결제수수료는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1,502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44]

즉, 지류상품권은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수수료)이 전액 자치단체 부담인데, 카드형의 경우 가맹점에게도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자치단체 부담이 가맹점에게 전가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43)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연매출 30억원 이하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연매출 3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제외하였다.

44) 2024년 카드결제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 120,153 ×0.25% = 300억원, 120,153억원 ×1.25% = 1,502억원

가맹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 자치단체는 가맹점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광명시, 전남 화순군은 카드결제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연매출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카드결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카드결제수수료를 지원하지는 않지만, 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가맹점의 카드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일괄 협약한 업체와 카드형상품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모바일상품권 발행을 위한 운영대행사와 별도로 협약하여 가맹점의 카드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5)]

[가맹점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사례]

| 지역 | 지원 내용 |
|---|---|
| 경기 평택 | 가맹점 카드결제수수료 일부지원(30%~40%), |
| 경기 광명 | 영세 소상공인 연매출 5억원이하 가맹점 반기별 4억원 지원 |
| 전남 화순 | 연매출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
| 경기 시흥 | 가맹점의 카드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일괄 협약한 카드형상품권 발행 대신 별도로 모바일상품권으로 운영업체와 위탁체결하여 운영 |

자료: 자치단체 제출자료

카드형상품권은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할 운영비가 가맹점에게 전가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가맹점에게 수수료 부담이 없는 QR결제 사용을 촉진하거나,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등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카드사는 별도의 모집행위 없이 자치단체와 협약을 통해 일정 금액의 카드결제수수료가 확보되는 것이므로, 카드결제수수료 인하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45) 경기도의 경우 A업체와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28개 시군에서 발행하는 카드형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일괄 협약하였는데, A업체는 경기도 시군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신 A 업체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결제수수료를 카드사와 배분하여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 3 자금관리 관련

### 가.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 여부 관리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나, 일부 지자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강행규정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각 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하여 받은 선불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보관하는데, 그 금액은 2024년 말 기준 약 2조원이다. 190개 자치단체별로 단순 계산하면 평균 100억원 수준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자금보유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6말 |
|---|---|---|---|---|---|
| 자금 보유 현황 | 1,407,381 | 2,352,611 | 2,280,174 | 2,006,168 | 2,226,484 |

주: 1. 연도말 기준
2. 일부 자치단체는 자금보유현황 미제출
자료: 각 자치단체 제출자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상품권 이용자가 선불로 지급한 예탁금이 안정적으로 보관·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10월 신설(2022.4월 시행)되었다.

동 규정의 신설로 2022년부터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 및 관리 현황을 각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도 적시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자금관리 규정]

| |
|---|
|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생략<br>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br>[본조신설 2021. 10. 19.] |

자료:「지역사랑상품권법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그러나 자치단체 홈페이지 조사 결과 일부 자치단체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금보유현황을 검색한 결과 최소 20여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상품권 자금보유 및 운영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금보유 현황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단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자금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강행규정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자치단체 소관 사무이나, 국비지원이 의무화되었고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적정 유통을 위한 현황 관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총괄부서라는 점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이 체계화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와 지원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안전부는 법률에 명시된 규정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나. 이자수입의 처리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마련 필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에 따르면 상품권 운영자금에 따른 이자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귀속(세외수입)하여야 하나, 일부 자치단체는 이자수입을 통장에 방치하는 등 세외수입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행정안전부는 각 자치단체의 자금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품권 운영자금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해당 규정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는 없었으나,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영대행사인 민간업체 계좌로 선불충전금을 운영하고 있어 선불충전금 잔액에 대한 이자수익이 민간업체로 귀속되는 문제와, 운영대행사의 경영난·부실로 인한 자금의 위험성 등이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되었고,[46]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규정이 2021년 10월 신설되었다.

[지역사랑상품권 자금관리 규정]

>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 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본조신설 2021.10.19.]

자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동 규정에 따르면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46) ·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1. 5.
· 2020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2020.10.19.

와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상품권 운영자금을 신탁하기 위해 사전 협의한 지방자치단체는 없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이자가 발생하는데, 해당 이자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규정하면서, '관련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귀속(세외수입), 차년도 상품권 발행 사업에 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자수입 처리 방법]

| |
|---|
| II.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br>2. 운영자금<br>(이자수입·낙전) 관련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귀속(세외수입), 차년도 상품권 발행 사업에 활용 |

자료: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2025.6.

실제 이자처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190개 자치단체에 대하여 '이자수입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일부 자치단체는 상품권 계좌에 단순 보관하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는 이자수입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마, 아, 자, 차, 타, 너, 더, 러 지역 등은 이자수입을 예치금으로 이월하거나 상품권 계좌에 보관하는 등 별도의 처리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일부 자치단체는 발행액이나 자금보유 현황에도 불구하고 이자 수입이 없고,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기재하지 않고 제출하였다. 이는 실제 이자수입의 처리를 하고 있지 않거나 이자수입을 세입 등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 사, 카 지역의 경우 자금보유현황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수입을 세외수입 처리하지 않는 사례]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 상품권 발행시작 | 발행액 | 자금보유 현황 | 이자 수입 | 이자수입 처리방법 |
|---|---|---|---|---|---|
| 가 | 2016 | 37,850 | 8,532 | - | - |
| 나 | 2013 | 42,464 | 3,731 | - | - |
| 다 | 2020 | 15,585 | 3,556 | - | - |
| 라 | 2001 | 34,140 | 3,279 | 5 | - |
| 마 | 2019 | 13,444 | 1,851 | 4 | 예치금으로 이월 |
| 바 | 2020 | 30,545 | - | - | - |
| 사 | 2001 | 11,564 | - | - | - |
| 아 | 2019 | 24,122 | 2,225 | 16 | 운용자금 활용 |
| 자 | 2019 | 18,695 | 2,736 | 2 | 차년도 상품권 발행 사업에 활용 |
| 차 | 2012 | 41,127 | 5,594 | 5 | 상품권 운영자금 귀속 |
| 카 | 2020 | 140,684 | - | - | - |
| 타 | 2018 | 20,284 | 1,333 | - | 상품권 계좌 보관<br>(이자수입 확인 안됨) |
| 파 | 2018 | 26,612 | 5,166 | - | - |
| 하 | 2019 | 19,800 | 4,823 | 5 | - |
| 거 | 2008 | 23,500 | 502 | - | - |
| 너 | 2000 | 14,321 | 2,378 | 2 | 잔액 보존 |
| 더 | 2001 | 11,057 | 1,676 | 1 | 미처리 |
| 러 | 2019 | 99,100 | 44,218 | 3 | 상품권 계좌 보관 |

주: 2024년 기준(자금보유현황은 2024년 말 기준)
자료: 자치단체 제출자료

이러한 문제는 자금처리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재하고, 중앙부처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자금관리 등을 자치단체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상품권 운영 자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보관·관리하도록 한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상품권 운영 자금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 V 결론 및 시사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에 대하여 국비지원이 의무화된 만큼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국비를 배분하는 수준을 넘어, 각 자치단체가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있어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비 지원, 운영수수료, 자금관리 현황 등을 분석하였으며,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국비 지원 시 지방비 최소분담율 차등 설정 필요

국비 지원율은 지역별로 차등(미지원, 3%, 5%, 7%)하고 있으나, 지방비 최소분담율을 모든 지역에 5%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별로 지방비 부담 여력의 차이가 있으며,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들은 지방비 최소분담율(5%)이 상품권 발행 확대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방비 최소분담율을 차등화하고, 자치단체가 상품권 운용 방향,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발행 및 운영 관리체계 정비 필요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가 가능할 정도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보편화되었으나,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이 자치단체별로 시행됨에 따라 위탁운영 수수료가 제각각이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도 부재한 상황이다. 실제 지류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대행을 위한 수수료율은 자치단체별로 6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다른 지역의 운영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자금보유현황의 홈페이지 등에 법적 공개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은 자치단체가 있고, 이자 수입도 세입처리가 원칙이나 통장에 방치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중앙정부의 관리나 행정적 지원은 미흡한 수준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이 자치단체 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2025년 국비 지원이 의무화되어 중앙정부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예정이고, 이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안전부는 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 관리체계가 정비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체계 평가**


발간일 2025년 11월 14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디자인여백플러스(tel 02·2672·1535)

ISBN 979-11-6799-239-0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5

국민을 지키는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87-002193-01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